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인도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인도(The Republic of India)
면적	3,287,263 km ² (자료원 : CIA, 2020. 11. 기준)
수도	뉴델리(New Delhi)
인구	1,380,000,000 명 (자료원 : IMF, 2020. 10. 기준)
민족(인종)	인도-아리안(72%), 드라비다(25%), 몽골계 및 기타(3%)
언어	힌두어, 영어 외 21개
종교	힌두(80.5%), 이슬람(14.2%), 기타(6%)
기후	열대 몬순, 온대 기후, 고산 기후 등 다양
국가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원수(대통령): 람 나트 코빈드 (Ram Nath Kovind)○ 취임일: '17. 7. 25. (5년 임기)○ 총 리: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취임일: '14. 5. 26 ('19. 5.19. 연임)○ 소속 정당: 인도인민당 (Bharatiya Janata Party)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73-12-10 (자료원 : 주인도 한국대사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무역협정 체결 및 발효	1974-08-01	무역협력	연월기준
문화협정 체결 및 발효	1974-08-01	문화협력	연월기준
과학기술협정 체결	1976-03-01	과학기술협력	연월기준. 동년 8월 발효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1985-07-01	이중과세 방지	연월기준. 1986년 8월 발효
항공협정 체결 및 발효	1992-03-01	항공협력 및 정기 민항노선 허가	연월기준
관광협력협정 체결	1993-09-01	관광협력	연월기준. 동년 10월 발효
투자보장협정 체결	1996-02-01	투자보장	연월기준. 동년 5월 발효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2004-10-01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 협력	연월기준. 2005년 6월 발효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2005-08-01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력	연월기준. 동년 10월 발효
한-인도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서명	2005-09-01	한-인도 방산군수협력	연월기준
세관협력협정	2006-02-01	세관협력	연월기준. 동년 4월 발효
해적방지 및 수색구조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 서명 및 발효	2006-02-01	해적방지 및 수색구조 협력	연월기준
과학기술협정(개정) 체결	2006-02-01	과학기술협력	연월기준. 동년 8월 발효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	2009-08-01	FTA 협약	연월기준. 2010년 1월 발효
수형자 이송조약 체결	2010-01-01	수형자 이송협력	연월기준. 동년 6월 발효
국방협력 및 국방기술 협력 양해각서 서명	2010-09-01	국방협력 및 국방기술 협력	연월기준
사회보장협정 체결	2010-10-01	사회보장협정	연월기준. 2011년 11월 발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체결	2011-07-0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력	연월기준. 동년 10월 발효
사증절차간소화 협정 체결 및 발효	2012-03-01	사증절차간소화	연월기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2014-01-01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협력	연월기준. 동년 10월 발효
이중과세 방지협정(개정) 체결	2015-05-01	이중과세 방지협정(개정)	연월기준. 2016년 9월 발효
시청각 공동제작협력 협정 체결	2015-05-01	시청각 공동제작협력	연월기준. 동년 9월 발효
항공협정 개정	2015-11-01	항공협정 개정	연월기준
군함건조 협력 양해각서 서명	2017-04-01	군함건조 협력	연월기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체결 및 발효	2017-06-01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 가능	연월기준

<자료원 : 주인도한국대사관>

한국교민 수

11,000 명 (자료원 : 주인도 한국대사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
 - 2018년 7월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인도 양국의 경제, 사회, 문화 교류를 강조하였으며, 이를 실현할 정책방안으로 '3P 플러스' 협력을 제시하였다.
 - 3P 플러스 협력은 한국정부의 신남방정책 슬로건인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에 미래를 더한 것으로, 대통령은 양국 간 교류활성화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상생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을 강조하였다.
 - 이에 대한 화답으로 인도 모디총리는 2019년 2월 한국을 방문하였다. -각종 언론보도-
-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
 - 2014년 인도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2009년 체결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제시하였으며, 2015년 모디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여 양국간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 양국은 실질적인 협력증진을 위하여 이중과세방지, 시청각 공동제작, 해운 및 물류 협력, 철도 및 도로 협력, 전력 및 에너지 신산업분야 교류증진, 청소년 교류, 국가 안보실간 협력 등 7건의 MOU를 체결하였다. - 각종 언론도보 -

경제

-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 달러 확대 합의, 경제교류 확대
 - 2018년 7월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개최된 공동성명을 통해 현재 200억 달러 수준인 양국 간 교역액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아울러, 한-인도 간 3P 플러스 협력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경제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제조업 협력강화, 인프라 구축 협력강화, 미래

기술 협력확대, 교역기반 강화의 네 가지 액션플랜을 제시하였다. - 각종 언론보도 -

○ 한-인도 CEPA 개정협상 진행

- 한국과 인도는 2009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하였으며, 2010년 발효된 이래 양국 간 교역 및 경제교류 확대에 큰 역할을 하였다.

- 하지만, 일본, ASEAN 등 인도가 체결한 FTA 조약에 비해 양허수준이 낮아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달았고, 이에 양국은 2016년 6월부터 CEPA 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7월 양국 정상은 CEPA의 조기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2019년 6월까지 8차 개선협상이 진행된 상황이다. - 각종 언론보도 -

문화

○ 영부인 인도 방문

- 7월 정상 방인 후속으로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재차 방문하였다. 김 여사는 모디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께서는 모디 총리께서 추진하고 있는 신동방정책과 문 대통령의 신 남방정책이 미래 지향적인 협력, 인적 교류, 체육 및 문화 등에서 조화로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아시아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양국 간 문화교류 증진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 아울러, 인도 최대의 축제인 디왈리 행사와 인도 북부에 위치한 허 왕후 기념공원 착공식 등 양국 간 소프트파워 교류 행사에 참석하였다.

○ 한국 문화원의 운영

- 인도의 수도권 뉴델리에는 주인도 한국문화원이 개설되어 있다. 한국 문화원은 한-인도 문화교류의 첨병으로 인도인과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최근에는 전인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 인디(Indie) 만화 축제 등을 개최하였고, 인도의 K-Pop 관심 증대를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등 양국 간 문화교류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자료원: 주인도 한국문화원)

○ 코로나 특별기 운영을 통해 양국 교민 귀국 허용

- 인도 정부의 봉쇄조치로 인해 3월 이후 모든 국제 및 국내선 이용이 제한되었으며, 해외 유입을 제한하고자 해외에 거주하는 비자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비자를 취소하고, 재발급을 통해 입국을 허가했다. 현재 비즈니스 비자를 포함, 학생비자, 관용비자 등 소지자들의 입국이 허가되었으나, 관광비자, E-visa, 의료비자 소지자들의 입국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 이에 한국 대사관 및 KOTRA 무역관 및 인도 정부는 각 나라 국민을 위한 특별기를 운영했으며, 11월까지 수차례 항공운행으로 자국민들의 한국 귀국 및 인도인들의 인도 귀국뿐 아니라 우리 기업인의 인도 입국을 지원하고 있다.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	7.11	8.12	6.81	4.2	-
명목GDP (십억\$)	2,289.75	2,652.25	2,718.73	2,900	-
1인당 GDP (PPP, \$)	6,752.48	7,277.04	7,858.69	8,378.38	-
1인당 명목 GDP (\$)	1,761.63	2,014.01	2,037.69	2,139.22	-
정부부채 (% of GDP)	46.88	45.05	45.61	44.6	-
물가상승률 (%)	4.5	3.6	3.43	4.54	-
실업률 (%)	-	-	-	-	-
수출액 (백만\$)	264,534.49	299,700.78	324,754.5	324,257.97	10,362.54
수입액 (백만\$)	361,595.99	446,900.75	513,645.92	486,053	17,131.7
무역수지 (백만\$)	-97,061.5	-147,199.97	-188,891.42	-161,795.03	-6,769.16
외환 보유고 (백만\$)	341,988.96	390,244.53	375,364.9	433,366.43	450,114.92
이자율 (%)	6.25	-	-	-	-
환율 (자국통화)	67.2	65.12	68.39	74.94	75.66

<자료원 : IMF, CMIE, 인도 중앙은행>

경제 동향

인도는 견조한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Next China 유력 대안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IMF가 2019년 10월에 발표한 GDP 국가 순위 중 5위를 기록했으며, 외국인 투자가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는 등, 잠재력있는 시장으로 인정받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던 2020/21 회계연도 인도 경제성장률을 대다수 마이너스로 전망하는 등 2019년 이후 경제침체기는 지속되는 중이다.

- 코로나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인도 거시경제

- IMF(2020)에 따르면, 2019년 인도의 명목 GDP는 2.97조 달러로 프랑스(2.76조 달러)에 앞선 세계 5위이다. 2016년 말 고액권 화폐통용금지 조치와 2017년 7월 도입된 통합간접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하지만 2018년 말부터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2019/20 회계연도 연간 성장률은 4.2%에 그친 상황이다. 더군다나 3월~6월 기간 시행된 인도 전역 봉쇄조치는 인도 경제의 마비를 초래했으며, 당해 초 6~7%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던 인도 경제성장률은 현재 마이너스 10%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 금리인하, 세계 경기둔화로 인도 루피화의 가치 또한 가파르게 떨어졌으나 외환위기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인도정부에 따르면 2019-20 회계연도 연간 FDI 유입액은 499.77억 달러로 전년동기의 443.66억 달러에 비해 13%가 증가하였으며, 봉쇄기간(4~8월) 유입된 순자본 FDI는 27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0%가량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 영향에도 외환보유고와 대외채무액 또한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 (외환보유고, '20년 11월) 5,728억 달러, (대외채무액, '20년 6월) 5,545억 달러

○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금리인하 정책

- 인도 루피화는 2018년 8월 13일 사상 처음으로 달러당 70루피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2월 24일 이후 코로나19 불안감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약 47억 달러 매도되면서 3월 23일 1달러당 76루피를 돌파했다. 인도 전역 봉쇄조치와 함께 필수재를 제외한 모든 제품의 제품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되었고, 서비스, 건설 등 산업 전범위적으로 경제가 마비되었다. 이에 인도 정부는 2019년에 4차례에 걸쳐 5.15%까지 인하했던 금리를 다시 조정하게 되었으며, 3월, 5월 두번에 걸쳐 금리를 4.0%까지 인하였다.

○ 대외요인에 따른 경제 역성장 및 높은 실업률

- CMIE가 발표하는 인도 실업률에 따르면, 기존 7~8%의 인도 실업률은 봉쇄 조치 이후 24.1%까지 증가했다. 봉쇄조치 종료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로 8월 기준 봉쇄 이전 수준인 6.69%까지 감소했다가 9월, 10월 재 증가를 보이고 있다. 높아지는 실업률에도 도심 지역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농촌지역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는 농촌지역 고용 회복을 위한 대책안을 마련 중이다.

- 세계은행은 매달 130만 명 가량의 신규 노동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노동시장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인도가 연 18%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20년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인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전망

1) 2020년 인도 거시경제 전망

인도는 외국인 직접투자 등 경제개발 자금과 석유 등 에너지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유가가 상승할 경우, 경기둔화를 피하기 어려운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금년도 코로나 여파로, 인도 환율이 무너져 역대 최고치인 \$1 = 76루피까지 치솟는 등, 환율이 급증하자, 인도 정부는 3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모든은행에 20억달러를 지원하는 등 간접적 통화스와프 창구(Dollar Swap Window)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3월 23일부터 시행한 인도 전역 봉쇄조치가 6월까지 연장됨에, 비필수제품을 다루는 많은 근로자 및 사업자들이 제품 생산 및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20조루피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의료 및 빈민층에 직·간접적 지원을 했으나,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들은 금년도 인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차년도에는 다시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으며, 인도 정부도 봉쇄 조치 이후 전년 대비 낮은 수치이긴 하나, 경제가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2) 반중 감정 심화, 중국의존도를 탈피하고자 하는 인도

6월 15일 발생한 중국-인도 국경문제로 인해 다수의 인도 군인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에 국가 전체적으로 반중 감정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비자들 중국산 제품을 기피하게되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인도 정부 프로젝트 참여 제한, 완제품 관세 인상, FTA 재검토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중국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을 보호 및 부흥시키고자 모디 총리가 발표한 자립인도(Self-reliant India)와 Make in India 정책하에, 인도 정부는 인도 내 제조상품에 대한 제조 인센티브 정책을 새로이 발표했다. 기존 시행되고 있던 의약품, 전자기기 부문 외에 자동차부품, 네트워크 장비, 섬유 등 다양한 분야로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10개 산업 부문도 추가되었다. 이에 인도 시장 내에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기타 외국 및 현지 생산 제품이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기업 또한 반사이익을 통해 휴대폰, 가전제품 등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41,992,468,435
2	아랍에미리트	30,041,757,704
3	홍콩	13,209,853,326
4	중화인민공화국	8,916,072,981
5	영국	8,565,159,154
6	싱가포르	7,354,855,168
7	독일	7,178,090,816
8	베트남	5,957,676,874
9	방글라데시	5,668,792,847
10	벨기에	5,356,387,120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46,018,074,648
2	아랍에미리트	28,636,261,382
3	홍콩	15,020,618,562
4	중화인민공화국	12,495,229,101
5	싱가포르	11,559,939,151
6	영국	8,954,721,336
7	독일	8,233,598,830
8	베트남	8,114,675,582
9	방글라데시	7,210,097,792

10	벨기에	6,219,888,787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51,660,708,965
2	아랍에미리트	28,540,295,068
3	중화인민공화국	16,375,995,807
4	홍콩	13,140,184,929
5	싱가포르	10,450,882,876
6	영국	9,747,043,913
7	독일	8,953,581,842
8	방글라데시	8,744,785,175
9	네덜란드	8,659,796,637
10	네팔	7,301,243,683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54,583,954,170
2	아랍에미리트	29,539,355,754
3	중화인민공화국	17,278,831,166
4	홍콩	11,518,656,662
5	싱가포르	10,765,971,941
6	영국	9,002,543,558
7	네덜란드	8,932,104,713
8	독일	8,638,273,019
9	방글라데시	8,242,921,602
10	네팔	7,108,861,060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60,483,103,324
2	미국	20,395,235,280
3	아랍에미리트	19,240,913,203
4	사우디아라비아	18,460,868,536
5	스위스	14,855,313,971
6	대한민국	12,214,045,763
7	인도네시아	12,189,258,691
8	독일	11,499,371,362
9	이라크	9,974,378,428
10	일본	9,808,530,779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71,922,745,771
2	미국	24,086,154,750
3	아랍에미리트	23,115,458,548
4	사우디아라비아	21,086,845,419
5	스위스	20,404,648,970
6	인도네시아	16,235,402,152
7	대한민국	16,091,809,023
8	이라크	15,310,044,463
9	오스트레일리아	14,352,346,052
10	독일	12,665,119,370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73,605,375,592
2	미국	32,715,035,117
3	사우디아라비아	28,430,201,256
4	아랍에미리트	26,930,304,415

5	이라크	23,037,985,438
6	스위스	18,032,111,987
7	대한민국	16,388,474,662
8	홍콩	16,062,630,807
9	인도네시아	16,045,665,231
10	이란	14,730,865,182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68,402,090,491
2	미국	35,103,547,036
3	아랍에미리트	30,308,877,435
4	사우디아라비아	27,000,124,372
5	스위스	24,024,410,418
6	이라크	22,085,015,527
7	홍콩	17,393,702,576
8	대한민국	16,309,683,705
9	인도네시아	15,640,848,389
10	싱가포르	14,984,729,897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239	기타	22,440,712,296
2	271019	기타	16,083,650,639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0,665,745,110
4	300490	기타	9,798,207,366
5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9,205,942,654

6	100630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5,057,559,956
7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4,329,592,463
8	020230	뼈 없는 것	3,680,617,844
9	030617	그 밖의 새우류	3,461,949,930
10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3,396,124,805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239	기타	22,876,671,382
2	271019	기타	22,221,289,227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2,474,036,200
4	300490	기타	9,656,147,730
5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8,369,358,386
6	100630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6,634,757,347
7	030617	그 밖의 새우류	4,610,758,477
8	711311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393,487,649
9	020230	뼈 없는 것	3,935,810,527
10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3,475,237,888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32,259,970,289
2	710239	기타	24,203,898,197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4,779,784,382
4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11,585,236,898
5	300490	기타	10,760,501,983
6	100630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6,827,016,971
7	030617	그 밖의 새우류	4,363,893,962

8	020230	뼈 없는 것	3,332,434,045
9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3,254,307,965
10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3,172,875,542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29,790,423,494
2	710239	기타	20,575,454,904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2,825,552,894
4	300490	기타	12,390,505,095
5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12,366,518,328
6	100630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6,616,848,796
7	030617	그 밖의 새우류	4,554,388,472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406,433,522
9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3,178,302,199
10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3,128,453,839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60,869,089,418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22,803,622,247
3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16,455,728,744
4	270119	그 밖의 석탄	11,734,262,378
5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0,613,424,485
6	851770	부분품	6,376,471,952
7	271111	천연가스	5,425,467,685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071,855,382
9	151110	조유(粗油)	3,666,906,926

10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	3,157,243,770
----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82,101,926,609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36,090,216,516
3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19,438,591,126
4	270119	그 밖의 석탄	19,074,850,960
5	851770	부분품	11,284,403,909
6	710239	기타	7,752,935,987
7	271111	천연가스	7,207,571,608
8	151110	조유(粗油)	4,576,688,312
9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	4,540,262,643
10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520,068,626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14,708,238,124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31,639,028,674
3	270119	그 밖의 석탄	22,583,271,454
4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16,652,100,409
5	271111	천연가스	10,877,068,110
6	710239	기타	9,825,695,359
7	851770	부분품	9,640,152,345
8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5,699,956,304
9	271019	기타	4,587,887,887
10	271113	부탄	4,099,801,765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01,948,596,893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31,099,306,366
3	270119	그 밖의 석탄	20,118,682,593
4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13,480,569,939
5	271111	천연가스	9,550,077,420
6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8,346,345,967
7	710239	기타	8,308,820,394
8	851770	부분품	8,168,050,141
9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5,313,237,188
10	271019	기타	4,936,763,093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6	11,596	4,189	7,407
2017	15,056	4,948	10,108
2018	15,606	5,885	9,721
2019	15,096	5,565	9,531
2020	9,556	4,110	5,446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1,433	10	1,422
2	7420	자동차부품	1,149	125	1,024
3	2140	합성수지	1,227	23	1,203
4	1336	윤활유	621	2	619
5	6132	열연강판	846	6	839
6	2262	의약품	53	137	-85
7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360	54	305
8	7461	선박	3	0	3
9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87	32	54
10	6134	아연도강판	373	0	37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0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	-------------	-----	------	------	------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898	3	895
2	7420	자동차부품	793	101	692
3	2140	합성수지	773	21	752
4	1336	윤활유	385	1	384
5	6132	열연강판	294	4	290
6	2262	의약품	269	115	154
7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263	36	227
8	7461	선박	229	0	229
9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211	23	188
10	6134	아연도강판	209	1	208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34	나프타	0	1,206	-1,207
2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36	808	-772
3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289	272	17
4	6181	합금철	57	240	-183
5	0135	박류	0	162	-163
6	2262	의약품	53	137	-85
7	7420	자동차부품	1,149	125	1,024
8	2261	농약	79	109	-31
9	6251	연괴및스크랩	155	126	29
10	4331	순면직물	0	87	-87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0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34	나프타	0	959	-959
2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7	593	-576
3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83	217	-34
4	6181	합금철	50	126	-76

5	0135	박류	0	120	-120
6	2262	의약품	269	115	154
7	7420	자동차부품	793	101	692
8	2261	농약	54	91	-37
9	6251	연괴및스크랩	120	83	37
10	4331	순면직물	0	83	-83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인도 - 한국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한국	2009-08-07	2010-01-01	
SAPTA(SAARC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1993-04-11	1993-04-11	
인도 - 스리랑카 FTA(Free Trade Agreement)	스리랑카	1998-12-28	1999-01-01	
인도 - 아프가니스탄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아프가니스탄	2003-03-06	2003-03-06	
SAFTA(South Asia Free Trade Area)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2004-01-04	2006-01-01	
인도-MERCOSUR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2005-03-19	2009-01-01	
인도 - 칠레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칠레	2006-03-08	2009-01-13	
인도 - 부탄 FTA(Free Trade Agreement)	부탄	2006-07-28	2006-07-29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대한민 국, 라오스, 스리랑카	2007-10-26	2008-01-01	
인도 - 싱가포르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싱가포르	2007-12-20	2007-12-20	
인도 - 아세안 FTA	아세안	2009-08-13	2010-01-01	
인도-네팔 무역협조협정 (COOPERATION TO CONTROL UNAUTHORIZED TRADE)	네팔	2009-10-27	2009-10-27	
인도-핀란드 AEC(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핀란드	2010-03-26	2010-03-26	
SAARC(South Asia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 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 탄, 스리랑카	2010-04-29	2010-04-29	

인도 - 말레이시아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말레이시아	2010-10-27	2012-01-01	
인도 - 일본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1-02-16	2011-02-16	

<자료원 : <http://www.cbic.gov.in/Customs-Notifications>>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한국, 인도	개정 협상중	8차 개선협상 완료('19- 6-17)
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FTA(Free T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논의중	19차 협상 진행중
인도 - 페르시아 GCC (Cooperation Council), FTA(Free Trade Agreement)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카타르	논의중	2차 협상 진행중
인도 - 남아프리카관세동맹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남아프리카, 레소토, 스위스, 보츠와나, 나미비아	논의중	7차 협상 진행중
인도 - 유럽 BTIA (Broad Based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인도, 유럽	논의중	15차 협상 진행중
인도 - 유럽 자유 무역 연합 BTIA (Broad based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논의중	17차 협상 진행중
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알제리 멕시코, 앙골라 모로코, 아르헨티나,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니카라과	논의중	3차 협상 진행중
인도 - 뉴질랜드 FTA (Free Trade Agreement)	인도, 뉴질랜드	논의중	11차 협상 진행중
인도 - 캐나다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인도, 캐나다	논의중	11차 협상 진행중
인도 - 호주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인도, 호주	논의중	10차 협상 진행중

인도 - 인도네시아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인도, 인도네시아	논의중	
인도-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FTA(Free Trade Agreement) 공동연구	부룬디, 코모로, 콩고, 지부티, 이집트, Eritrea, 에티오피아, 케냐,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	논의중	3차 협상 진행중
인도 - 이스라엘 FTA (Free Trade Agreement)	인도, 이스라엘	논의중	9차 협상 진행중
인도 - 미국 Trade Policy Forum Joint Statement	인도, 미국	논의중	12차 협상 진행중
인도 - 방글라데시 FTA (Free Trade Agreement)	인도, 방글라데시	논의중	
인도 - 스리랑카 FTA (Free Trade Agreement)	인도, 스리랑카	논의중	9차 협상 진행중
인도 - 몰디브 FTA (Free Trade Agreement)	인도, 몰디브	논의중	
인도 - 몽골 FTA (Free Trade Agreement)	인도, 몽골	논의중	
제 2차 인도 - 싱가포르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인도, 싱가포르	논의중	3차 협상 진행중
인도 - 태국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태국	논의중	30차 협상 진행중

<자료원 : <http://www.cbic.gov.in/Customs-Notifications>>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인도의 주요 수입금지·제한 품목 및 인허가 품목은 상공국 산하 무역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금지·제한 품목 및 인허가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수입금지품목: 주로 동물의 고기, 유지 등이며 총 88개 품목이 지정됨. 2020년 10월 냉매가 채워진 에어컨에 대하여 수입금지 적용 추가.

- 수입제한품목: 동식물, 육류, 일부 섬유, 무기, 폭발 등으로 총 428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함. 2020년 7월 컬러TV, 타이어에 대하여 수입제한 적용 추가.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1) 품질인증제도 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도는 품질인증제도인 BIS는 제품에 대한 기준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198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선택이 아닌 강제 시행제도로 해당하는 품목이 매우 많고 인증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관련 기업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BIS 인증은 크게 'Mark' 및 'Registration' 제도로 나뉘며, 2020년 6월 기준 'Mark' 제도 대상품목은 337개, 'Registration' 제도는 49개 품목이 인증 대상이다.

'Registration' 제도 인도 내 지정 BIS 검사기관에서 샘플검사를 통해 인증되며, 검사비용은 1,000루피(약 16,000원)이고 약 15~90일 정도가 소요된다. 그에 비해 'Mark' 제도는 BIS 검사관이 직접 파견되어 제조공장 실사를 해야 하며, 그에 수반되는 항공비, 숙박비, 1일 출장비 등이 모두 인증 신청 기업 부담이다. 또한, 대개는 BIS 검사관이 파견 스케줄을 잡는 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평균적인 인증 소요기간은 6개월이나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인증대상 품목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어 BIS인증 관련 비관세장벽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BIS 주요 품목

- Mark Scheme 주요 품목: 철강, 화학, 시멘트 및 실린더 등
- Registration Scheme 주요 품목: 모니터, 키보드, LED 및 일부 가정용품 등

○ BIS 품목 확인 관련 링크: <https://bis.gov.in/index.php/product-certification/products-under-compulsory-certification/>

2) 화장품인증제도(CDSCO :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인도는 2010년 5월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한 규제 조항을 담은 Gazette Notification G.S.R 426(E)를 발행하여 수입 화장품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도 내에 화장품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 CDSCO에 화장품 등록해야 한다.

CDSCO는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로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법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and Rules 1945)에 의거하여, 인도의 보건복지부인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에 속해있는 의료 장비 규제 담당기관이다. CDSCO는 규정과 표준을 정하고, 약품, 진단법, 장비 및 화장품의 수입 및 생산 허가를 내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콜카타, 뭄바이, 첸나이 및 가지아바드 네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생산되는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에 대해 승인하고 라인센스를 발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CDSCO 등록 증명서 Form43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Form42와 함께 총 10개의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규정법상 CDSCO 지원서는 접수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발급이 되어야 하나 인도의 느린 행정으로 발급 기간이 장기화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2년에 한번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며, 갱신은 불가하다. 품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역시 재신청을 통해 등록 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하고 제품의 색깔별로 다른 인증을 요구하는 등의 복잡한 등록 절차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8년 12월 12일에는 화장품 인증 비용을 기존 카레 고리당 250달러인 인증 비용을 카테고리당 2,000달러 및 품목별 50달러로 약 10배가량 인상 시키며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3) 무선통신인증제도(WPC: Wireless Planning & Coordination)

인도 내로 무선송신기, 무선수신기, RC 장난감과 같이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선 WPC(Wireless Planning & Coordination)기관으로부터 ETA(Equipment Type Approval) 승인을 받아야 한다.

WPC기관은 1952년 설립된 인도 정보통신기술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의 산하 기관으로 주로 무선통신장비 및 라이선싱을 포함한 주파수 대역 관리와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블루투스 기능을 포함한 무선통신기능이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ETA를 받기 위해서는 Radio Test Report(RF Test Report)를 제출해야 하는데 Radio Test 기준선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지 않고 제출 서류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일부는 직접 등록 해야하는 등의 복잡한 인증 절차를 가지고 있다.

4) 식품안전 인증제도(FSSAI, The Food Safety and Standard Authority of India)

FSSAI는 Food Safety and Standard 2006 법령에 의거해 창설된 인도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산하 정부기관이다. 2006년 제정된 식품안전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에 따라, 식품의 제조, 보관, 유통, 판매, 수입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를 운영하며, 세부내용은 2017년 9월 11일에 발표된 Food Safety and Standard Regulation 2017 규칙에 의거, 시행하고 있다.

FSSAI 인증제도에 의거하여, FSSAI에 등록된 수입자만 식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FSSAI수입자격이 있는 수입자라도 실제로 수입할 물품을 사전에 FSSAI 실험실로 보내어 성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샘플링 테스트에 통과하더라도 실제 통관 시 실물을 실험실로 보내어 같은 성분인지 한번 더 확인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사전 샘플 실험에 대한 비용은 음료, 물, 우유와 같은 특정 물품은 12,000루피이며, 이외의 품목은 5,000루피가 소요된다.

TBT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통칭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이라 한다. 현재 인도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을 위해 각종 인증제도 및 규제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도의 무역기술장벽(TBT)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에 대한 유효 기간 규정

- 식품에 대한 까다로운 유효기간 기준

수입 당시 식품의 유효 기간은 본래 제품 수명의 60% 이상이 남아있어야 하며, 제품 수명은 제조일과 유효기간 만료일을 토대로 산출하는데 이러한 규정은 인도 국내산 제품과 비교하여 수입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 부실한 항만보건소(PHO:Port Health Officer)의 검사 절차

모든 식품 화물은 통관 전에 PHO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전까지 화물창고에 보관되며, 검사 통과에 실패하면 화물은 반송되거나 폐기 처분된다. 대부분의 식품 통관은 인증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샘플링 테스트를 위한 실험 시설이 부족해 검사 대기 중인 제품은 유료 보관 창고에 장시간 방치되는 경우도 많으며, 일부 창고는 식품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다.

○ 샘플검사 절차

PHO 검사를 받지 못하는 항만은 해당 항만에서 가까운 중앙식품실험실 또는 보건당국 (Directorate General of Health Service)에서 인가한 실험실에 샘플을 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샘플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까지 1일에서 1개월까지 소요돼 식품 유효기간이 짧아지고 샘플 테스트 비용이 발생하여 수입자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험실의 검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검사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잘못된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식용유와 유지, 콩류, 시리얼 제품, 분유, 연유, 색소성분 및 첨가물은 필수적으로 샘플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2011년 8월 FSSAI의 시행 후 기존보다 1개 추가된 4개 샘플로 변경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1개 샘플은 식품 분석가에게 전달되고, 2개 샘플은 FSSAI가 지정한 관리자, 나머지 1개는 업체 요청 시 정부가 승인한 샘플 실험실로 전달된다. 이때, 식품 분석가와 실험실의 테스트 결과가 상이할 경우 최종 심사를 위해 제 3의 실험실로 전달 후 분석된 결과로 판정된다.

FSSAI의 시행으로 새로운 조정 절차가 추가되었는데, 분석 결과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검사 판정에 대한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주 정부에 의해 임명된 관리자가 조정 절차를 주재한다. 식품 안전 항소 재판소는 법원과 동등한 권한이 부여되므로 심각한 위반 사례에 한해 실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법정 분쟁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고 판결 절차가 간소화됐다.

2) 라벨링 규정의 확대 적용

소매를 목적으로 인도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들은 Standard of Weights and Measures Rules의 조항들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사항들을 명시해야 한다.

- 수입자명과 주소
- 포장된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
- 표준 단위로 표기된 총수량
- 제품의 포장연월
- 포장된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고 소매가 (세금, 운송비, 수수료, 광고비, 운송비 등 모두 포함)
- 수입국(Source of Import)
- (식품이나 화장품의 경우) 유효 기간

통관 전 루피화로 표시된 최고 소매가(Maximum Retail Price, MRP)를 라벨에 명시하는 것은 對 인도 수출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라벨에 명시된 제품 가격은 세금 산출 근거로 활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판매업자들은 최고가를 실패매가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확한 최고가 예측이 중요하다. 한번 정해진 MRP는 수정할 수 없으며,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관 물량부터 인상이 가능하다.

3) 중고 자동차 수입규제

인도 정부는 중고 차량 수입 시, 중고 차량의 연수가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고, 이륜차 및 삼륜차를 제외하고 모든 중고 차량의 운전 자석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자동차 내 미터기는 킬로미터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중고차량 수입은 모두 뭄바이 세관(Customs Port at Mumbai)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중고 차량은 인도로 수출할 경우 별도의 테스트도 거쳐야 하며 이는 수출 및 선적전에 완료해야 한다. 테스트는 중앙정부에서 고시하는 시험 인증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는데, the Vehicle Research and Development Establishment, Ahmednagar of the Ministry of Defence of the Government of India, Automotive Research Association of India, Pune or Central Farm Machinery Training and Testing Institute(트렉터) 등이 속한다.

이 외 배기량 제한도 있는데, 수입하는 중고 자동차 배기량은 3,000cc를 넘어야 하며 1,000~2,500cc의 중고 차량은 전면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륜차의 경우 스쿠터는 50cc~500cc 사이의 모델은 수입 가능하며, 모터사이클은 250cc 이상의 모델에 대해 수입이 가능하나 800cc를 넘길 수 없다.

4) 중고 전자기기 수입규제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2019년 5월 7일 중고 전자기기 국내판매 및 수입에 대한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Requirement of Compulsory Registration) Order, 2012'를 개정하였다. 해당 고시를 개정하기 전에는 인도 내로 중고 전자기기를 수입하거나, 인도 내에서 중고 전자기기를 정비하여 재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고시로 인해 인도 내로 중고 전자기기를 수입하거나, 인도 내에서 재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하지만 수입거나 인도 내에서 중고 전자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중고 전자기기에 대한 BIS 인증을 다시 받고, 그에 맞는 라벨링 및 포장 을 재실시하여야 하며, 대외무역총국(DGFT)으로부터 중고 전자기기 판매를 허가받아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인도의 관세 업무는 재무부 산하의 5개 부서 중 재정수입국(Department of Revenue) 산하의 간접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 and Customs)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세청에서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를 담당하고 국세청에서 간접세를 담당하고 있으나, 인도의 경우는 이를 나누지 않고 통합부가가치세(IGST)로 인도 관세청인 간접세위원회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1) 인도 관세법 개요

인도는 기본관세의 부과·징수 및 관세 일반에 대한 규정인 관세법(Customs Act)과 기본관세 이외의 추가관세 등에 대한 규정인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을 기준으로 1962년 관세법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본관세 변동 및 수입규제 현황을 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의 고시(Notification No.00/2018-Customs)을 통해 제정·시행하고 있다.

2) 인도의 수입 관세 구조

인도의 관세 구조는 ①기본관세(BCD, Basic Customs Duty), ②사회보장세(SWS, Social Welfare Surcharge), ③통합수입부가가치세(IGST, Integrated Goods and Service Tax) 및 ④보상세(Compensation Cess)로 구성되어 있다.

- 수입 과세가격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시)

- ㉠ CIF 기준 물품 가격 : 10,000원
 - ㉡ (CIF 기준 물품 가격 10,000원)의 ①기본관세 10% : 1,000원
 - ㉢ (기본관세 가격의 1,000원)의 ②사회보장세 10% : 100원
 - ㉣ (㉠+㉡+㉢)의 합산 관세 가격 : 11,100원
 - ㉤ (㉣ 11,100원)의 ③통합수입부가가치세 18% : 1,998원
 - ㉥ (㉣ 11,100원)의 ④보상세 10% : 1,110원
 - ㉦ 총 관세 과세 가격 : ㉡+㉢+㉤+㉥ : 4,208원
- * 예시의 총 관세율은 CIF 기준 물품 가격의 42.08%임

인도는 2017년 7월 통합부가가치세(GST) 도입 이후 이전의 교육세(Education Cess) 등의 면목을 사회보장세(SWC)로 전환하였으며, 기본관세액의 10%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담배, 자동차, 항공기 등 소수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보상세(Compensation Cess)라는 항목으로 추가 세수를 징수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2020년 2월 1일부터 건강세(Health Cess)를 의료기기 품목에 5%씩 부과하고 있다.

3) 통합수입부가가치세의 이해

인도는 2017년 7월 Excise Duty, VAT, CST 등 10여 가지의 간접세 항목을 CGST(중앙정부간접세), SCST(주정부간접세) 및 IGST(통합수입부가가치세) 세 가지 항목으로 통합하였으며, 통합수입부가가치세(IGST)를 수입 품목별 7개 구간(0~28%)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산품을 포함한 생필품에는 작은 세율, 공산품을 포함한 사치품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상품마다 0%, 0.25%, 3%, 5%, 10%, 18%, 28%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정부정책 및 현지사정에 맞게 GST를 주기적으로 변동시키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HS코드 10자리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과 다르게 인도는 HS코드 8자리를 사용 중이며, 세분된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 및 수입규제 등이 다르므로 인도의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o Indian Trade Portal을 통한 관세율 확인 방법 안내

- 링크: <https://www.indiantradeportal.in/>

- ① 사이트 중간 ITC-HS Code란에 해당 HS코드 6자리를 기입한다.
- ② 해당 HS코드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선정하여 'Import'를 클릭한다.
 - * 아이템의 정확한 영어 명칭을 모를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영어 명칭을 클릭해도 무방함.
- ③ 해당 6자리 HS의 세부적인 8자리 HS코드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한다.
 - * HS코드는 세계 6자리까지는 공용이며, 한국은 세부적으로 10자리, 인도는 세부적으로 8자리를 사용하고 있음.
- ④ 국가 중 수출국가(예-South Korea)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한다.
 - * ALL, APTA, CEPA, MFN를 모두 클릭.
- ⑤ 관세율을 확인한다.
 - Most Favoured Nation Tariff은 기본관세율을 의미한다.
 - Asia-Pacific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는 APTA 관세율을 의미한다.
 - Asia-Pacific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Rules Of Origin는 APTA 원산지 기준을 의미한다.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은 CEPA 관세율을 의미한다.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은 CEPA 원산지 기준을 의미한다.
 - * CEPA 및 APTA 적용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Not Applicable'로 표시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정식통관

인도에서 일반적인 경우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행정상 운송 수입의 경우 3~4 근무일, 항공 운송은 약 1~2 근무일이 소요된다. 일단 물품이 입항하게 되면 보세구역장치에 적하되고, 이후 전자데이터교환(EDI)신고 또는 수작업신고 통해 수입신고를 하게 된다. 이후 인도 관세청의 수입요건, 관세 평가 등을 검사하는 Appraiser Section과 관련 서류 및 관세율을 재점검하는 Audit Section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를 통과하면 모든 서류에 서명 받게 된다. 이후 Challan No.라는 인도 관세 납부를 위한 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이를 근거로 관세를 완납하게 되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또한 정식통관의 경우 인도 세관은 일반적으로 화물 도착 후 7일 이후부터 체화료(Demurrage Charge)를 부과하고,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5일 이후부터 항공운송인 경우 3일 이후부터 체화료가 부과한다.

2) 임시 통관

인도에 들어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24개월 이내에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는 경우 임시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임시통관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관세를 납부해야하는 데, 다시 반출할 시 장차했던 시간에 비례하여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인도 내로 반입되지 않고 바로 반출할 경우 최대 98%까지 환급이 가능하나, 인도 내 해당 물품이 사용될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관세의 환급이 불가하다.

◦ ATA Carnet

- ATA 가르네 (ATA Carnet)은 Admission Temporaire이라는 임시통관을 뜻하는 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의 영어 그리고 수첩을 뜻하는 불어 Carnet의 머리 글자 조합으로, 임시 통관을 위한 수첩을 말한다. ATA협약에는 인도를 포함하여 전세계 71개국이 서명하여 발효 중이며, ATA 통관 수첩은 국제 관세 서류(International Uniform Customs Document)의 일종으로 물품의 임시 통관 시 관세 및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보증서 역할 및 수출입 신고 시 세관에 제출하는 수출입 신고서 역할을 한다.

3) 전시물품의 통관

전시·박람회, 학회, 세미나, 견본품 및 각종 회의를 위한 물품의 통관은 관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그 관세액이 5,000루피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1년에 그 누적 관세액이 60,000루피를 초과하거나 샘플의 개수가 15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샘플의 가치가 10,000루피 이하일 경우 관세가 면제되나, 샘플의 가치가 10,000루피 이상일 경우 9개월 안에 반출 되어야하며, 필요의 경우 각 세관의 Assistant Commissioner of Customs 권한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관에서 판단하여 고가의 샘플의 경우 보증 관세를 지불하고 9개월 안에 재 반출한다는 조건으로 통관할 수 있다.

4) 약식통관

인도는 2,000루피 이하의 제품의 경우 약식통관이 가능하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물품에도 적용이 된다. 인도는 2,000루피 이하의 품목을 3가지 분류로 나누어 HS코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 9804.10.00 의약품
- 9805.10.00 가공 또는 가공되지 않은 고기, 생선, 야채 등의 음식물 및 비누, 과일 등의 생활용품
- 9804.90.00 기타

인도 상공국 산하 무역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은 위의 3가지 분류 HS코드의 과세가격에 총42.0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수입 제한·금지 품목으로 분류 되지 않으며, 자가사용으로 판단되는 물품은 면세되나, 실무적으로는 세관공무원에 따라 자가사용 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5) 허가 통관

수입의 제한 품목 및 식물, 씨앗, 과일 등 허가증이나 수입 라이선스가 필요로하는 품목의 경우 허가 통관을 실시하게 된다. 정식 통관과 그 절차가 다르지는 않으나 필요 허가증 또는 라이선스를 수입신고시 수입 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한다. 식물, 씨앗, 과일의 경우 동 식물 검역소에서 샘플의 테스트를 통해 발부 받을 수 있으며, 제한 품목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입 라이선스를 발부 받아 수입 할 수 있다

- 자료원 : 인도 관세법 (The Customs Act, 1962) -

통관 시 유의사항

○ 통관의 지연

인도의 통관은 행정상 일반적으로 3~4 근무일이 소요된다. 이를 단축하기 위해 통관 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아직 까지 그 행정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으며, 한국과 다르게 거의 모든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통관 지연이 자주 발생한다. 또한 사소한 서류 기재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이를 빌미로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 통관 정보의 불투명

인도의 관세 행정은 한국에 비해 그 정보 및 기준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하며, 실무선의 재량권이 크고 융통성 없는 처리 관행으로 인해 통관 애로가 자주 발생한다. 인도는 한국과 달리 통관 단계(Appraiser Section)에서 관세평가를 하는데, 중고 기계 등과 같은 물품의 경우 송장(Invoice)상의 가격과소평가(Undervalue)를 문제 삼아 직권으로 상품 가치를 정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 FTA 사후 협정 적용 불가능

인도는 공식적으로는 FTA 사후 협정 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세관의 행정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실무적으로 FTA 사후 협정 적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통관 시 FTA 협정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중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FTA 사후 협정 적용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나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 공무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 또한,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다른 제도의 경우에도 증빙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 인도 지역별 세관관할

인도의 세관행정은 면목상 통일되어 있으나, 지역별 차이나 관할 세관 당국 간 소통 미비로 인하여 관세통관 상의 애로해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한 세관지에서 특정 HS코드로 정식통관이 되었다고 하여도, 다른 세관에서 같은 품목을 통관할 때는 해당 HS코드를 인정 받지 못할 수 있는 세관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서류의 수정

인도는 통관에 필요한 서류에 기재 오류나 상호 간의 불일치가 있을 시 이를 수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통관절차가 2,3주씩 지연되기도 한다. 영문 한글자 오타를 수정하는데 3주를 허비해야 할 수도 있으며, 허위신고를 이유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 원산지관리규칙 시행(CAROTAR 2020)

2020년 9월 21일부터 인도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칙 시행으로 한-인도 CEPA 등 인도와 체결한 무역협정의 관세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적용된 원산지 기준 및 생산공정 등을 기재한 Form I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원 : KOTRA 자체 정보 종합 -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KGL Network Private Limited

주소	Plot No. 261-262, 2nd Floor, -6,, Street Number 6, Mahipalpur Extension, Mahipalpur, New Delhi, Delhi 110037
전화번호	+91)11-4570 9700
이메일	YsCHANG@kglindia.com
홈페이지	http://kglindia.com/
비고	한국업체

○ Taewoong Logistics

주소	No 75 beekeyen towers coral merchant street manady Chennai, Chennai, Tamil Nadu 600001
전화번호	+91)44-43432716
이메일	James@taewoong.in
홈페이지	http://www.e-tgl.com/index.jsp
비고	한국업체

○ Hanaro Logistics Pvt. Ltd.

주소	1006, 10th Floor, Tower-A, BPTP Park Centra, Sector-20, Gurgaon, Haryana - 122003
전화번호	+91)124-4634500
이메일	htjung@htns.com
홈페이지	https://www.htns.com
비고	한국업체

○ CTC FREIGHT CARRIERS PRIVATE LIMITED

주소	No. C-510, Steel Chambers, Kalamboli, Navi Mumbai - 410218, Maharashtra, India
전화번호	+91)22-27420241
이메일	ctcfreight@yahoo.com
홈페이지	http://www.ctcfreight.com/
비고	뭄바이 소재

○ Gati Ltd.

주소	Plot No.20, Survey No.12,
전화번호	+91)40-71204284
이메일	customerservice@gati.com
홈페이지	https://www.gati.com/contact-us/contact-details/

<자료원 : KOTRA 뉴델리 무역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투자법(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투자신고 방법 및 절차 서술)

대인도 투자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주요 투자 관련 법률로는 산업법, 외환관리법, 회사법, 공장법, 소득세법 및 중앙물품세법 등이 있다.

○ 산업법

- 상공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산업법(Industries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51)은 각종 산업별 개발 관련 규제를 총망라하고 있는 법률로 투자 대상 산업에서 어떤 인허가가 필요하고 어떤 산업장려책이 시행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률이다. 이 법률의 제정 목적은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뤄 인도 경제가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데 있다. 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은 크게 38가지로 분류되며 주요 산업은 금속산업, 연료, 보일러, 전자장비, 기계 등이 있다.

○ 외환관리법

- 외환관리법(The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은 인도중앙은행의 외환 규제국이 관장하고 있으며 인도의 대외교역을 촉진하고 인도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투자자금 도입 같은 자본금융 거래, 자산 및 청산자금 송금, 해외 자금 차입과 상환에 관련된 모든 외환의 대인도 유출입을 규정하고 있다.

○ 회사법

- 회사법(The Companies Act, 2013)은 기업부에서 관장하는 법률로서 1956년 제정된 이후 2013년 전면 개정됐다. 인도의 회사 설립, 유지, 청산에 관한 제반 절차는 이 법에 규정돼 있으며 자본금 및 이사 선임 등 회사 설립 및 청산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 소득세법

- 소득세법(The Income Tax Act, 1961)은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률로 개인소득세과 법인 소득세 등 직접세를 관장하며 용역, 라이선스 및 기술사용료 등 각종 해외 지급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다.

○ 중앙물품세법

- 중앙물품세법(Central Excise Duty Act, 1944)은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판매세, 물품세, 서비스 세, 부가가치세, 관세, 물품 진입세 등 간접세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2) 투자신고 방법 및 절차

FDI에 대한 승인은 정부 사전승인이 불필요한 자동승인과 정부(외국인 투자진흥 위원회, FIPB)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FIPB 승인의 두 종류가 있다. 대부분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 장려 목적으로 절차 및 시간을 간소화한 자동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자동승인

- ① 투자 대금 납입 후 30일 내,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지역사무소에 사실 통보 → ② 주식(지분) 발행 후 30일 내 인도 중앙은행 신고

○ 정부승인(일반투자자의 경우)

- ① 인도 재무부(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DEA) 제출 → ② 산업별 정부 담당기관의 심사 → ③ 상기 자동승인 과정을 거침

투자인센티브

1) 중앙정부 주요 인센티브

Invest India에 따르면 인도 중앙정부의 주요 인센티브는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 수출촉진용 자본재제도(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a), 재화 수출제도(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a), 산업별 연구개발 촉진제도(Industrial R&D Promotion Program), 무관세 수입허가제도(Duty Free Import Authorisation Scheme & Project Import Scheme)등 5개 이상이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 정부는 2005년 6월 특별경제구역을 설치하고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입주 요건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 주정부(지방정부) 주요 인센티브

Invest India에 따르면 인도의 주정부 인센티브에는 맞춤형 인센티브제도(Customised Package Incentive Scheme), 이익보조금제도(Interest Subsidy), 세금 인센티브(Tax Incentives), 인지세 감면제도(Stamp Duty Exemption), 자산 보조금제도(Capital Subsidy), 전기세 감면제도(Electricity Duty Exemption) 등 6개 이상 있다. 그 중 Electricity Duty Exemption는 전기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부여하며 구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Tax Incentives는 세금 감면을 지원한다.

3) 뉴델리 인근 하리아나 주정부 투자 인센티브 현황(주정부 인센티브 예시)

(1) 낙후지역 개발 프로젝트

○ 투자보조금

- D블록: 첫 5년 동안 주정부 통합간접세(State GST, 이하 SGST)의 75%, 향후 3년 동안 35%가 지급됨

- C블록: 첫 5년 동안 75%, 향후 3년 동안 25%가 지급됨

- B블록: 첫 5년 동안 30%, 향후 3년 동안 15%가 상업 생산 개시일로부터 외국인 직접투자의 100% 상한으로 지급됨

○ 고용 창출 보조금

-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5년 동안 직원 1명당 514달러(USD)까지 지원

○ 전기세 공제

- B, C블록: 최대 5년간 100%까지 공제

- D블록: 최대 7년간 100%까지 공제

○ 인지세 환불

- D블록: 100% 면제

- C블록: 75% 면제

- B블록: 산업용 토지일 경우, 50% 면제

○ 외부개발비

- B, C, D블록: 외부개발비용의 50% 면제

(2) 식품가공 분야

- 주정부 투자지원금
 - C, D블록: 14만 달러(USD)까지 지원
 - B, C, D블록: 최대 10개의 저온 유통 및 부가가치 인프라 프로젝트를 건설하면 35%, 투자보조금 최대 71만 5,000 달러(USD)까지 지원
- 식품단지 설립 시, 10년 동안 SGST 100% 환급
- 포장기술 개발 및 획득 시, 유닛당 사업비 50%, 최대 2만 8,000달러(USD)까지 지원
- 농촌 수익 및 유무형의 가치 창출 시, 투자금의 50%, 최대 35만 달러(USD)까지 지원
- 소형식품단지 설립 시, 사업비 50% 지원
- C, D블록: 식품단지당 최대 143만 달러(USD)까지 지원

(3) ESDM(Electronics System Design and Manufacturing) 분야

- 인지세
 - 사전 지정된 IT단지, IT도시, 기술단지, STP(하수처리장) 및 그 외 주정부로부터 배정된 구역에 건설할 시, 인지세 100% 면제
- 전기세 공제
 - 생산 후, 7년간 전기세 100% 면제
- 전력 보조금
 - IT/ITeS 유닛은 전력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투자기업이 주정부와 MOU를 맺으면 1kW당 0.08 USD를 지원 단, 소비된 전력의 일정 수준까지 제한
- SGST
 - C, D 블록: 10년 동안 100% 환급
- 자본보조금
 - 지정된 구역에 ESDM 인프라 시설을 설립하는 투자자는 직접투자액의 최대 50%까지, 공동 기반시설을 개발하는 투자자는 최대 35만 달러(USD)까지 인도 정부(DeitY, Department of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 초대형 프로젝트 자본 보조금 및 SGST 환급
 - 1,430만 달러(USD) 이상의 대형 투자 시, 주정부에서 특별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
 - 정보기술부(Department of Electronics&Information Technology, DEITY)로부터 자본지출 추가 지불 금액의 50% 지원(적용받는 첫해 10개 Anchor 유닛당 최대 143만 달러(USD))
 - 초대형 프로젝트는 IT 산업을 위한 표준 패키지 외에 특별 인센티브 패키지를 받을 수 있음
 - ESDM 유닛의 주정부 통합간접세 100% 환급 가능, 최대 고정 투자금의 100%(A블록은 5년, B, C, D블록은 10년)

(4) 물류

- 자본 보조금
 - 창고의 경우, 최대 66만 USD 한도 내에서 25%의 고정적인 자본 보조금 지급
- 물류단지 보조
 - 물류단지 인프라 개발 명목으로 최대 215만 2,000USD 한도 내 25%의 고정적인 자본 보조금 지급
- 통합물류단지
 - 통합물류단지 인프라 개발 지원으로 최대 358만 6,000USD 한도 내 25%의 고정적인 자본 보조금 지급

- 인지세
 - 인지세 100% 면제
- 전기세 면제
 - 7년간 100% 전기세 면제
- 이자 보조금
 - 창고의 경우, 원활한 자금 수요를 위해 3년간 연 최대 1만4,000USD 한도 내 5%의 정부 보조금 지급
- 물류단지 재정지원
 -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3년간 최대 2만 8,000USD 한도 내에서 정부 보조금 명목상 5%의 이자 보조금 지급

(5) 제약산업

- 자본 보조금
 - 공장 및 기계류 지불 시, 최대 7만 USD 한도 내 해당 금액 25% 상환
- 이자 보조금
 -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최대 3만 5,000 USD 한도 내 5년간 연 5%의 이자 상환
- 고용 창출 보조금
 - 개인역량개발 목적(숙련/반숙련 수준 목표)으로 SC/여성에게 연 500USD 지급 및 일반적인 범주에 5년간 연 400 USD 지급
- 의료단지 개발 지원
 - Karnal시 의료단지 개발 목적으로 주정부에서 최대 716만 USD 한도 내 내외부적 인프라 개발비 100% 지급

(6) 섬유산업

- 섬유산업 단지 자본 보조금
 - 7년간 신규, 확장, 다양화, 근대화 프로젝트에 대해 A와 B블록은 3%, C와 D블록은 8%의 이자 보조금을 지급
 - 자본 보조금 10%, 최대 2만 8,000USD(A, B블록), 자본 투자에 대해 최대 716만 USD(C, D블록) 지급
- 인지세 배상
 - 토지 및 건물의 매입/공개 시, 개별 단위별로 내는 인지세는 50% 이상(A, B블록) 및 100%(C, D블록 내외부) 상환
- 섬유단지 개발업자용
 - 인프라 시설 설립 시, 최대 143만 USD 내 전체 개발비의 50% 지원
 - 섬유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구매 시 인지세 100% 공제

(7) 참고_하리아나주의 블록은 지역별로 구분

- A 블록: Faridabad, Gurgaon, Panipat, Sonapat, Rohtak, Jhajjar, Rewari, Palwal
- B 블록: Ambala, Bhiwani, Hisar, Jhajjar, Karnal, Mewat, Panchkula, Panipat, Palwal, Rewari, Rohtak, Sonapat, Yamuna Nagar
- C 블록: Ambala, Bhiwani, Fatehabad, Hisar, Jhajjar, Jind, Kaithal, Karnal, Kurukshetra, Mewat, Mahendergarh, Palwal, Panipat, Rewari, Rohtak, Sirsa, Sonapat, Yamuna Nagar
- D 블록: Bhiwani, Fatehbad, Hisar, Jhajjar, Jind, Kaithal, Mewat, Mahendergarh, Panchkula, Rewari, Sirsa, Sonapat,

제한 및 금지(업종)

1) 투자 제한 및 금지 업종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 회사에 대한 최고 투자 허용 한도 및 분야별 제한은 산업 분야에 따라 상이하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비거주자에 의한 인도 회사 지분참여 자동 승인 또는 승인 조건부에 따라 허용되며, 이 경우 FDI 정책에 규정된 특정 한도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연금, 보험, 민간항공 등 투자가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100%까지 투자를 허용한다.

○ 투자 금지 업종

- 정부, 민간, 온라인 및 기타 복권 관련 사업
- 카지노를 포함한 도박 및 내기 사업
- Chit funds(인도식 계모임, 공동사업자금)을 이용한 사업
- Nidhi company(기금을 받아서 활동하는 회사, 조합원끼리 금전거래)
- 양도 가능 개발권의 거래(TDRs;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 부동산업이나 농가 건설
- 시가, 궤련(cheroot) 포함해 담배 및 담배 대체물 제조
- 민간부문 투자에 개방되지 않는 투자활동 및 분야(원자력 에너지, 허가된 철도 운영을 제외한 부분)
- 복권 사업 및 도박 활동을 위한 가맹점 영업권, 상표, 브랜드명, 영업 계약 허가를 포함하는 어떠한 형태의 외국 기술 협력 역시 금지

○ 정부승인 및 자동승인 업종

- 방위산업(74%까지 자동승인)
- 인공위성 분야 (74%까지 정부승인)
- 방송콘텐츠서비스(분야에 따라 49% 혹은 100% 정부 승인)
- 민간 부문 은행업, 민간보안회사(49% 까지 자동승인, 이후 74%까지 정부승인)
- 멀티브랜드 유통업(51% 정부승인)
- 항공수송서비스(49%, 정기 노선의 경우 100%)
- 통신서비스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 승인)
- 증권 인프라사, 보험, 연금, 전력거래 (49%까지 정부승인)
- 출판매체(신문, 뉴스 및 시사를 다루는 정기간행물 발간의 경우 지분 26%까지 정부승인)
- 공공 부문 은행업(20%)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특별경제구역(SEZ)

인도 정부는 2005년 6월 SEZ 설치 및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입주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특별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 Act, 2005)과 경제특구시행령(Special Economic Zone Rules, 2006.2)을 공표해 SEZ 설립에 실효성을 부여했다.

2) SEZ 지정 현황

인도 정부는 2020년 10월 30일 기준 총 426건의 SEZ를 정식으로 승인하였고, 33건의 원칙승인이 허용됐다. 이 중 358건이 고지된 (Notified) 상태이고, 262건의 SEZ를 운영하고 있다. 고지된 358건의 SEZ 중에서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SEZ는 7개가 있으며, Kandla SEZ, SEEPZ SEZ, 노이다 SEZ, MEPZ SEZ, Cochin SEZ, Falta SEZ, Visakhapatnam SEZ 가 있고, 나머지 SEZ는 주정부가 관할한다.

(1) 중앙정부 운영 SEZ

- Kandla SEZ의 지역은 Kandla와 구자라트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화학과 철강 등이 대표적이다.
- SEEPZ SEZ의 지역은 뭄바이와 마하라슈트라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전자, 보석류 업종이다.
- 노이다 SEZ의 지역은 우타르 프라데시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에는 주로 전자제품 등이 있다.
- MEPZ SEZ의 지역은 첸나이와 타밀나주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자동차와 조선 등이 있다.
- Cochin SEZ의 지역은 코친과 케랄라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농식품과 IT 등이 있다.
- Falta SEZ의 지역은 Falta와 웨스트벵갈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화학과 전자제품 등이 있다.
- Visakhapatnam SEZ의 지역은 Visakhapatnam와 안드라 프라데시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엔지니어링, 건설, 화학 등이 있다.

(2) 주(州) 별 SEZ 운영 개수 및 특화 산업

- Tamil Nadu주 운영 중 SEZ 41개: IT, ITES(24), 엔지니어링(8), 섬유(4), 제약(1), 기타(4)
- Maharashtra주 운영 중 SEZ 32개: IT, ITES(20), 제약(3), 엔지니어링(3), Solar(1), 기타(5)
- Karnataka주 운영 중 SEZ 32개: IT, ITES(25), 엔지니어링(2), 제약(2), 항공(1), 섬유(1), 기타(1)
- Telangana주 운영 중 SEZ 30개: IT, ITES(21), 제약(3), 보석류(1), 항공(1), 기타(2)
- Andhra Pradesh주 운영 중 SEZ 20개: IT, ITES(6), 제약(4), 섬유(4), 농식품(2), 기타(4)
- Gujarat주 운영 중 SEZ 20개: IT, ITES(6), 섬유(2), 엔지니어링(2), 제약(1), 화학(1), 기타(8)
- Kerala주 운영 중 SEZ 19개: IT, ITES(14), 농업(1), Solar(1), 전자(1), 기타(2)
- Uttar Pradesh주 운영 중 SEZ 13개: IT, ITES(9), 엔지니어링(1), 기타(3)
- Haryana주 운영 중 SEZ 7개: IT, ITES(7)
- West Bengal주 운영 중 SEZ 7개: IT, ITES(5), 보석류(1), 기타(1)
- Madhya Pradesh주 운영 중 SEZ 5개: IT, ITES(4), 기타(1)
- Odisha주 운영 중 SEZ 5개: IT, ITES(2), 알루미늄(1), Mineral(1), 기타(1)
- Punjab주 운영 중 SEZ 3개: IT, ITES(2), 제약(1)
- Rajasthan주 운영 중 SEZ 3개: 보석류(2), 기타(1)
- Chandigarh주 운영 중 SEZ 2개: IT, ITES(2)
- Chhattisgarh주 운영 중 SEZ 1개: Solar(1)
- Delhi, Goa, Jharkhand, Manipur, Nagaland, Puducherry, Tripura주는 현재 운영 중인 SEZ 없음.

3) SEZ 지역의 주요 인센티브

- 소득세법 10AA 조항에 따라, 최초 5년 동안 SEZ 지역의 수출 이익에 대하여 100% 소득세 면제받을 수 있으며 다음 5년 동안은 50% 소득세 면제, 그다음 5년 동안은 증가한 수출 이익의 50%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115JB 조항에 따라, 최저한세 면제받을 수 있다.
- Central Sales Tax, Service Tax, State sales tax를 면제받을 수 있다.
- 2017년 IGST 조항에 따라, SEZ 지역에 위에 3가지 세금은 GST로 통합되고, 0%의 세금을 부과한다.

산업단지

○ 노이다, 그레이트 노이다(Noida and Greater Noida)

규모	202km ²
위치	#169, Chitvan Estate Sector Gamma-II Greater Noida(201308), Uttar Pradesh
임차료	Addition to 4000 to 8000 스퀘어미터 : 9,300루피 Addition to 8000 to 20000 스퀘어미터 : 7,800루피 Addition to 20000 to 40000 스퀘어미터 : 6,300루피 Addition to 40000 to 80000 스퀘어미터 : 5,100루피 Above 80000 스퀘어미터 : 3,900루피
관할기관 및 연락처	Greater Noid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Phone : 0120 233-6030, P: 0120 233-6031 Fax : 0120 233-6002, 233-6006 담당자 : Mr. Anup chandra Pandey 직책 : Chairman 이메일 : chairman@gnida.in 담당자 : Mr. Narendra Bhooshan 직책 : CEO 이메일 : ceo@gnida.in
비고	주요 유치산업으로 전자 가전 제품, 섬유, 의류,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 비히와디(Bhiwadi)

규모	21.45km ²
위치	Udyog Bhawan, Tilak Marg, Jaipur, Rajasthan 302005
임차료	Phase 1-4(bhiwadi) : 6,000루피 Rampur mudana : 6,000루피 kuskhera Phase 1-3 : 5,000루피 Tabugeda : 5,000루피 Pathredi : 5,000루피 Chaupanki : 5,000루피 Karoli : 60,000루피 Selarpur : 6,000루피
관할기관 및 연락처	Rajasthan State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Corporation Phone : 91-141-2227751-755 & 4593201-205 담당자 : Kuldeep Ranka 직책 : Chairman 담당자 : Mr. T.C. Bhatt 직책 : 지역 담당자 RIICO Ltd, Unit-I Bhiwadi, Distt Alwar RIICO Ltd., Bhiwadi-II Phone : 91-01493-223070/220070 담당자 : Mr. Shiv Kumar 이메일 : bhiwadi1@riico.co.in, bhiwadi2@riico.co.in
비고	주요 유치산업으로 알루미늄, 섬유, 의류, 운송장비, 화학제품, 전선 케이블 제품 등이 있다.

○ 구르가온(Gurgaon)

규모	32km ²
위치	Plot No: C-13-14, Sector 6, Panchkula-134109, Haryana, INDIA
임차료	Guugram : 48,000루피 Gurgaon 34-35 : 32,000루피 Industrial estate , Gurugram : 48,000루피 Gurugram phase-1-5 : 48,000루피
관할기관 및 연락처	HSIIDC Industrial Estate, Phase V, Vanijya Nikunj, Udyog Vihar, Gurgaon Phone : +91-172-2590481, 2590482, 2590483 Fax: +91-172-2590474 이메일 : info@hsiidc.org.in 담당자 : Mr. Arun Kumar Garg, Mr. Subhash Vats, Ms. Babita sharma
비고	주요 유치산업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 플라스틱 등이 있다.

○ 마네사(Manesar)

규모	13.76km ²
위치	HSIIDC (Estate Wing) Industrial Model Township, Manesar, Distt. Gurgaon
임차료	IMT, Manesar(Phase 1-4, TPT Hub/WHTH) : 23,237루피
관할기관 및 연락처	HSIIDC (Estate Wing) Industrial Model Township, Manesar, Distt. Gurgaon. Phone : +91-0124-2291351, 2290326 담당자 : Ms. Priya Sardana, Mr. Subash Vats, Ms. Aninderbir Kaur
비고	주요 유치산업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 플라스틱, 섬유 등이 있다.

○ 바왈(Bawal)

규모	13.35km ²
위치	HSIIDC, Sector-3, Delhi-Jaipur Highway, IMT Bawal(Distt. Rewari)
임차료	IMT Bawal(Phase I - IV) : 7696루피
관할기관 및 연락처	HSIIDC Growth Centre, Sector-3, Delhi-Jaipur Highway, Bawal (Distt. Rewari) Phone : +91-0128-4264120 이메일 : hsiidcbawal@gmail.com 담당자 : Mr. Sunil Dutt Paliwal, Mr. Mukesh Gupta, Mr. Ram Kumar
비고	주요 유치산업으로 오토바이, 자동차부품, 알루미늄 제품 등이 있다.

<자료원 : 관할기관 홈페이지 등으로부터 KOTRA 뉴델리 무역관 종합>

주요 지역별 여건

○ 구자라트(Gujarat)

- 면적: 196,063km²
- 인구: 6,040만 명
- 상업수도: 아메다바드(Ahmedabad)

- 주요 지역: 다헤즈(Dahej) 석유화학 투자지역은 바루치(Bharuch)지구의 캄바트만 해안 벨트의 453km² 재개발 지역에 조성됨.
- 주요 산업: 화학 및 석유화학, 항공 우주 및 국방, 제약, 농업 및 식품 가공
- 비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 공장 잠나가르(Jamnagar)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 해체 야드 바브나가르(Bhavnagar)가 있으며, 인도 유일의 액체 화학 항구 터미널이 있음. 구차라트는 인도에서 전기가 남는 주 중의 하나이며, 주요 공산품으로 시멘트, 석유화학 제품이 있음.

○ 하리아나(Haryana)

- 면적: 44,212km²
- 인구: 2,530만 명
- 주도: 찬디가르(Chandigarh)
- 주요 시설: 뉴델리 및 찬디가르의 2개의 국제 공항
- 주요 산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인도 자동차 생산의 50%, 이륜차의 33%, 트랙터의 11% 생산), 농업기반(인도의 2번째 곡물 생산지이며 전국 바스마티 쌀 수출의 60% 이상 차지), 식품 가공 산업, 섬유 및 의류 산업, 전자 및 IT/ITeS(인도의 3번째 소프트웨어 수출 지역), 신재생 에너지 및 태양광 단지
- 비고: 인도 에스컬레이터의 80%, 크레인의 52%, 이륜차의 33%가 생산되며, 약 1,670개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있음. 또한, 9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있으며,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음.

○ 카르나타카(Karnataka)

- 면적: 191,791km²
- 인구: 6,110만 명
- 주도: 벵갈로르(Bengaluru)
- 주요 시설: 3,250km의 철도망을 구축하여 물류 이동이 원활함. 11개의 항구가 있으며, 뉴 망갈로르 항만은 인도 9번째로 큰 항만임.
- 주요 산업: 식품 가공, 전자 시스템 설계 및 제조, 섬유(인도 전체 의류 생산의 20% 차지하며 대형 의류회사들이 진출함. 144개의 R&D센터와 168개의 인력개발센터가 있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IT 및 BPM(벵갈루루는 세계 4번째로 큰 기술 클러스터이며, 인도 최대의 소프트웨어 수출기지)
- 비고: 인도의 기술 혁신, R&D 자본으로 유명한 주이며, 인도에서 가장 큰 바이오 기술의 허브 지역임. 인도 의료기관 및 의료 산업개발 기관이 밀집해있고,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도 밀집함.

○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 면적: 307,713km²
- 인구: 1억 1천2백만 명
- 주도: 뭄바이(Mumbai)
- 주요 지역: 8개의 전문 식품단지(부티보리, 산드라, 네바사, 라투르, 오스마나바드, 난데드, 치플룬), 주요 자동차 산업단지(Pune, Nashik, Aurangabad, Mumbai, Nagpur)
- 주요 산업: 자동차(푸네 핼프리 친치와드 지역의 글로벌 자동차 및 부품 생산시설, 아우랑가바드에는 Skoda, Bajaj Auto, Audi AG), 국방제조(푸네에 마힌드라, 타타자동차, Bharat Forge), 식품 가공, 섬유
- 비고: 4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선 공항이 별도로 있으며, 2개의 주요 항만과 53개의 중소항만이 있음. 자왈할랄 네루 항구는 인도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가장 큰 항구임.

○ 라자스탄(Rajasthan)

- 면적: 342,239km²
- 인구: 6,850만 명
- 주도: 자이푸르(Jaipur)
- 주요 지역: 자동차 클러스터 비와디(Bhiwadi)는 8,000에이커에 달한다.
- 주요 산업: 광산 및 광업 분야(라자스탄은 인도에서 가장 큰 주이며, 2015년까지 138개의 주요 광물 광산, 15,136개의 소형 광물 광산, 74개의 탐사 허가, 18,249개의 채석장 허가가 부여됨, 직접고용 80만 명과 250만 명 간접 고용을 제공), 건설(2022년까지 100만 채의 저렴한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자이푸르, 우다이푸르, 아지메르, 코다가 주요 스마트 도시 사업지로 선정됨)

○ 타밀 나두(Tamil Nadu)

- 면적: 130,058km²
- 인구: 7,215만 명
- 주도: 첸나이(Chennai)
- 주요 지역: 첸나이의 3개 항구와 투티코린의 1개 항구는 인도 내 가장 편리한 항구임. 첸나이 컨테이너 터미널은 인도 내 가장 효율적임.
- 주요 산업: 자동차 산업(포드, 현대자동차, 르노 닛산, BMW가 연간 140만대를 생산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IT 및 ITeS 산업에 대한 토지, 건물 구입 시 50% 감면)
- 비고: 생명공학 정책(글로벌 제약사 화이자, 글로벌 화학 회사 다우 케미컬, Shasun 화학 등의 투자가 활발함)

○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 면적: 240,928km²

- 인구: 1억 9,980만 명

- 주도: 러크나우(Lucknow)

- 주요 지역: 노이다(Noida), 그레이터 노이다(Greater Noida) 지역은 모바일 및 가전 기업들의 제조 공장이 밀집되어 있음.

- 주요 산업: 인도 관광에서 가장 유명한 타지마할이 소재하여 최근 노이다-그레이터 노이다-아그라(Noida-Greater Noida-Agra) 노선의 야무나(Yamuna) 고속도로(165km)를 개통하며 관광산업이 발달함. 특히, 노이다와 그레이터 노이다는 인도 북부의 최대 제조공장 밀집 지역임. 이 지역은 인도 IT 기업들의 본사와 지점이 많이 있으며, 농업 및 원료 제조 기업의 공장들이 밀집해 있음. 대표적으로 TATA, IBM, 인도 설탕 제조업체의 공장이 있음.

- 비교: 한국 기업으로는 2018년 완공된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이 대표적이며, 관련 1, 2차 벤더 공장들도 밀집. 특히 LG전자, 동국제강, 세아제강, 삼화페인트 등 여러 한국 제조업체의 공장이 설립되었으며, 최근 중국 전자·모바일 제조업체들이 상당수 진출함. 2019년 중국 유명 가전업체 하이얼(Haier)은 그레이터 노이다 지역에 4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제2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있음.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44,064.1	44,480.57	39,903.84	42,156.19	50,552.96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7,572.42	5,072.36	11,140.55	11,466.92	12,104.15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8	410	119	846,102	463	1,071,770
2019	450	130	684,687	535	446,776
2020	147	43	220,458	163	361,89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2	0	1,904	1	149
제조업	205	55	719,360	257	948,78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	1	1,359	3	1,359
건설업	43	10	20,055	25	19,842
도매 및 소매업	54	24	41,369	49	40,910
운수 및 창고업	22	6	25,689	32	25,848
숙박 및 음식점업	18	7	1,539	21	1,651
정보통신업	26	6	15,473	36	15,137
부동산업	2	1	808	1	1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	4	480	17	47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	3	16,508	14	15,501
교육 서비스업	2	0	1,423	3	1,875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2	1	43	2	4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	2	1	92	2	92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	0	650	2	1,650
제조업	250	68	417,044	311	356,802
수도, 하수 및 폐기 물 처리, 원료 재생 업	2	0	5,215	3	5,215
건설업	19	6	13,075	15	13,048
도매 및 소매업	57	20	23,942	67	22,352
운수 및 창고업	20	4	15,596	22	14,505
숙박 및 음식점업	14	4	755	16	766
정보통신업	33	11	30,591	35	26,986
부동산업	1	1	171,500	3	2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10	2,739	39	2,68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6	1	2,432	10	1,428
교육 서비스업	8	4	932	9	917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3	1	216	3	21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	0	200	1	200
광업	1	1	1	1	1

제조업	73	19	183,892	82	169,89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1	11,244	1	11,13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	0	970	1	970
건설업	12	3	1,165	9	536
도매 및 소매업	23	8	4,243	25	2,191
운수 및 창고업	7	3	377	10	1,172
숙박 및 음식점업	2	0	97	2	97
정보통신업	9	3	3,425	10	2,810
금융 및 보험업	1	1	12,620	1	12,261
부동산업	0	1	0	3	159,0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1	1,004	12	1,01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	1	640	2	20
교육 서비스업	1	0	440	1	44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1	140	2	14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기아자동차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판매, 생산법인
업종	자동차, 자동차 부품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모기업명	기아자동차

○ 동국제강 인도법인

진출연도	2011
------	------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금속
취급분야	냉연강판
모기업명	동국제강

○ 산다-한성 테크놀로지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고무, 플라스틱, 금속
취급분야	플라스틱 사출 및 프레스 가공
모기업명	한성IMP

○ 성지트레이닝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의복, 잡화류
취급분야	성인의류 및 아동복
모기업명	없음

○ 시방제과점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없음
업종	없음
취급분야	제빵업
모기업명	없음

○ 씨제이 다슬 로지스틱스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물류서비스

모기업명	씨제이 대한통운
------	----------

○ 유아이엘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전자.정밀기기.부품
취급분야	휴대폰 부품류(소물, 악세서리류)
모기업명	없음

○ 이안 인디아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생산, 서비스
업종	전기.전자.정밀기기.부품
취급분야	휴대폰 케이스 조립 및 불량 검수
모기업명	(주) 이안전자

○ 이에스텍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기계.장비
취급분야	없음
모기업명	(주)이에스테크인터내셔널

○ 인텍전기전자(주)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기계장비, 전기.전자.정밀기기.부품
취급분야	없음
모기업명	없음

○ 제페토 인디아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취급분야	PC 게임 및 모바일 게임
모기업명	(주)제페토

○ (주)네오바이오텍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기타 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임플란트기기
모기업명	없음

○ (주)삼양감속기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기계.장비
취급분야	기어 및 동력장치 제조
모기업명	없음

○ 주식회사 태화기업 인도법인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전자.정밀기기.부품
취급분야	1. 냉장고 컴프레셔용: 모터 코어타발, 열처리, 모터조립, 하우징. 2. 자동차: 모터 코어타발, 하우징 3. 실링팬, 환풍기 팬 완제품
모기업명	주식회사 태화기업

○ (주)아이델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전기.전자.정밀기기.부품, 기타 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
모기업명	없음

○ (주)한국알미늄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금속
취급분야	알루미늄 포장재
모기업명	(주)한국 알미늄

○ 중부 에스켄 인도법인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화학.의약
취급분야	페인트
모기업명	중부 에스켄

○ 케이엠티씨 인디아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해상운송 서비스
모기업명	고려해운(주)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없음
취급분야	철강, 화학, 비료
모기업명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 김신 파인 푸드 (주)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식료품
취급분야	식품 제조 및 유통
모기업명	없음

○ 한국야금(주)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기타 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절삭공구
모기업명	한국야금

○ 한화 큐셀 인도지사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전기.전자.정밀기기.부품
취급분야	태양광 발전소 투자
모기업명	한화그룹

○ 히달고 로지스틱스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없음
모기업명	덕양유엘씨(주)

○ GS건설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기타 서비스업

취급분야	설계도면 작성 및 제공 서비스
모기업명	GS건설(주)

○ GS글로벌뉴델리지사

진출연도	1979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및 기타 서비스업
취급분야	수출입/유통업
모기업명	GS글로벌(주)

○ KC코트렐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기계, 장비
취급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
모기업명	KC그린홀딩스

○ LG전자인도생산법인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 전자 부품
취급분야	전기, 전자
모기업명	LG전자(주)

○ LG전자인도판매법인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취급분야	전기, 전자
모기업명	LG전자(주)

○ LG하우시스인도법인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고무.플라스틱
취급분야	건축용 내외장재 및 자동차 부품
모기업명	LG하우시스(주)

○ Tv18 Homeshopping Network Limited (Homeshnop18)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없음
모기업명	GS홈쇼핑

○ 기가테라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LED
모기업명	(주)기가테라

○ 기업은행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지점
업종	없음
취급분야	금융 서비스업
모기업명	IBK기업은행(주)

○ 까마인디아

진출연도	2000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업
취급분야	무역컨설팅, 회사설립컨설팅
모기업명	KAMAINDIA Pvt., Ltd.

○ 나진무역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기타 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연마제
모기업명	현지 단독진출

○ 농협은행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없음
취급분야	금융서비스 제공
모기업명	NH농협

○ 대교인도법인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교육
취급분야	Learning Center 방문형 모델 사업 및 프랜차이즈를 개발
모기업명	대교㈜

○ 동광무역

진출연도	2003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부동산
취급분야	델리 NCR지역 부동산
모기업명	현지 단독진출

○ 동진전자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PCBA
모기업명	동진테크(주)

○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

진출연도	1994
진출형태	독립법인
업종	기계, 장비
취급분야	발전플랜트 건설, 발전용 보일러 생산 및 발전소 운영 관련 서비스
모기업명	두산중공업(주)

○ 롯데 글로벌 로지스틱스 인디아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물류, 통관
모기업명	롯데 글로벌 로지스

○ 바텍인디아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치과용 엑스레이 진단장비
모기업명	바텍

○ 범한판토스인도법인

진출연도	2003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해운, 항공 화물 주선업, 창고, 운송업
모기업명	범한판토스(주)

○ 브릭스인디아(주)뉴델리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식료품, 유통
모기업명	현지 단독진출

○ 삼성중공업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취급분야	선박 도면 설계
모기업명	삼성중공업(주)

○ 삼성전자 인도법인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휴대폰, 가전제품
모기업명	삼성전자(주)

○ 삼성화재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없음
취급분야	보험 정보 조사업
모기업명	삼성화재(주)

○ 삼화인디아에너지세이빙스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전자부품(콘덴서)판매
모기업명	삼화콘덴서그룹(주)

○ 세라젬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기타 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마사지기기
모기업명	세라젬(주)

○ 신라인프라텍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서비스판매
업종	식료품,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광통신 부품
모기업명	현지 단독진출

○ 신한은행뉴델리지사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지점
업종	없음
취급분야	수신(예금), 여신(대출), 외환(수출입 등), 보험
모기업명	신한은행(주)

○ 쌍용건설뉴델리지사

진출연도	1998
------	------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없음
취급분야	토목 및 인프라 건설
모기업명	쌍용건설㈜

○ 아시아나항공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기타 서비스업
취급분야	항공 운송
모기업명	아시아나항공(주)

○ 에스디로직스인도법인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냉장고 컴프레서 용 부품정밀가공
모기업명	에스디 이엔티

○ SK 루브리컨츠 인도법인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기타 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윤활기유, 윤활유, 그리스, 석유류, 제조, 도소매/부동산(점포,토지) 임대 등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체
모기업명	SK루브리컨츠(주)

○ 에이에이스튜디오뉴델리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건축설계, 인테리어탄기

모기업명	현지 단독진출
------	---------

○ 에치엠디지털인디아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물 수질 계측기: TDS, PH, ORP 측정 계측기 / 당도계, 염도계, 타이머 생산, 판매
모기업명	에치엠디지털㈜

○ 엘에스전선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전력용 초고압 및 배전 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생산 및 시공
모기업명	LS전선㈜

○ 이니스프리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화학, 의학
취급분야	화장품/생활용품 제조
모기업명	아모레퍼시픽㈜

○ 이투스교육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교육
취급분야	공대/의대 입시 시험 대비 교육영상 서비스
모기업명	이투스교육

○ 제일인디아

진출연도	199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기타 서비스업
취급분야	광고 기획 및 제작(ATL, Digital), 기업 프로모션 행사 기획 및 실행, 리테일 제작물 제작 및 설치(매장 구축, 집기 제작, 간판, 브랜딩)
모기업명	제일기획(주)

○ (주) 아이센스 인도법인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혈당측정기, 및 진단제품(한국본사생산)의 인도지역 수입, 판매법인
모기업명	(주) 아이센스

○ 만도소프트텍 인디아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 Steering, Brake, Suspension
모기업명	(주) 만도

○ 케이씨코트렐(주)프로젝트오피스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기계, 장비
취급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집진기, FGD, SCR etc.)
모기업명	KC그린홀딩스

○ 코인도트레이딩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의료기기, 화장품 수입 후 유통 및 판매 진행
모기업명	현지 단독진출

○ 포스코건설인도법인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토목, 건축 서비스업
모기업명	포스코건설(주)

○ 포스코대우 인도법인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철강, 화학, 석유가스, 비료, 식량, 비철, 기계, 자동차부품 등
모기업명	포스코대우

○ 포스코인디아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금속
취급분야	제철소 건설 및 철강재 생산, 철강 전품목
모기업명	포스코(주)

○ 포커스텍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자, 정밀기기, 부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2륜, 4륜 자동차 관련 부품조립
모기업명	현지단독진출

○ 하나로지스틱스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운송
모기업명	하나로TNS(주)

○ 한국건설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건설, 건축, 인테리어, 현지인 인력공급, 스크랩, 스크린골프
모기업명	현지 단독진출

○ 한국관광공사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공공행정
취급분야	관광정보제공
모기업명	한국관광공사

○ 한국무역보험공사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없음
취급분야	보험 관련 연구
모기업명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무역협회뉴델리지부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지부
업종	협회 및 단체
취급분야	없음
모기업명	한국무역협회

○ 한국수출입은행

진출연도	1994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없음
취급분야	공적수출신용(Official Export Credit)
모기업명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철도시설공단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기타 서미스업
취급분야	인도 렉나우 메트로 기술용역 General Consultancy
모기업명	없음

○ 한림정공 주식회사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없음
모기업명	한림정공(주)

○ 한솔로지스틱스 인도법인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기타 서비스업
취급분야	창고운영 및 배송, 포워딩, 수출입통관
모기업명	한솔로지스틱스

○ 한전KPS구르가온

진출연도	1998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전시, 가스, 증기 및 수도
취급분야	전력
모기업명	한전KPS

○ 현대로템

진출연도	2001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기타 제품 제조업
취급분야	철도차량
모기업명	현대로템

○ 현대자동차인도법인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크레타, i-20, 1-10등
모기업명	현대자동차(주)

○ 현대제철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없음
취급분야	철강제품(열연, 냉연, 후판, 봉형강, 강관 외)
모기업명	현대제철(주)

○ 현대종합상사뉴델리지사

진출연도	1984
진출형태	지점
업종	없음
취급분야	무역
모기업명	현대종합상사(주)

○ 현대캐피탈인도법인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기타 서비스업
취급분야	자동차 금융 컨설팅 서비스
모기업명	현대캐피탈(주)

○ 효성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섬유, 피혁
취급분야	나일론 원사, 폴리에스터 원사, 스판덱스/섬유, 의류
모기업명	효성TNC

○ 롯데첨단소재 인도 지점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지점
업종	화학, 의약
취급분야	Plastic Resin Material(ABS, PC)
모기업명	롯데첨단소재

○ 동부인디아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냉연강판, 용융아연도강판, 석도강판, 갈라강판
모기업명	동부제철(주)

○ 누가메디칼인디아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의료기기(온열기)
모기업명	누가베스트

○ 궁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숙박 및 음식점
취급분야	음식
모기업명	현지 단독진출

○ LG생명과학

진출연도	200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생명공학
취급분야	의약품
모기업명	LG생명과학(주)

○ LG화학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기타 서비스업
취급분야	본사 인도 영업 지원
모기업명	LG화학(주)

○ 삼성엔지니어링 IndiaPvt.,Ltd.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설계, 플랜트건설
모기업명	삼성엔지니어링(주)

○ 대한항공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없음
취급분야	항공
모기업명	대한항공(주)

○ 두원오토모티브시스템인디아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두원공조(주)

○ 디어포스-카이코디어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비금속광물
취급분야	연마제품(산업소모품), 멤브레인(수처리소모품)
모기업명	DEERFOS

○ 삼성물산 상사부분 인도법인

진출연도	198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제조업
모기업명	삼성물산(주)

○ 삼성물산 건설부문 인도법인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빌딩, 지하철, 댐, 항만 등
모기업명	삼성물산(주)

○ 삼성SDS 인도법인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취급분야	IT
모기업명	삼성SDS

○ 씨이비엔지니어링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CNG 및 LPG 차량 개조 및 서비스
모기업명	KNC-Korea(주)

○ 에스폼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지점
업종	없음
취급분야	건축자재
모기업명	에스폼(주)

○ 오토닉스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기계 센서 및 컨트롤러
모기업명	현지단독진출

○ 이노션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취급분야	광고대행
모기업명	이노션(주)

○ 이랜텍인도법인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없음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모바일폰 부품(케이스, 충전기, 배터리 등)
모기업명	이랜텍(주)

○ 조이로지스틱스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없음
취급분야	물류, 운송, 통관
모기업명	현지 단독진출

○ 카스(주)

진출연도	199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전자저울
모기업명	카스(주)

○ 푸른기술인도법인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취급분야	금융자동화기기, 출입통제기기
모기업명	푸른기술

○ 플렉시언비즈니스엔지니어링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취급분야	텔레마케팅, 컨설팅 에이전시, 소프트웨어개발 아웃소싱
모기업명	현지 단독진출

○ 한화석유화학뉴델리지사

진출연도	1987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없음
취급분야	석유화학
모기업명	한화케미칼(주)

○ 허테크노엔지니어링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플라스틱 에칭
모기업명	현지 단독진출

○ 미래에셋자산운용인도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금융, 보험
취급분야	보험
모기업명	미래에셋자산운용

○ 삼성물산

진출연도	1984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도매, 소매업
모기업명	삼성물산㈜

○ 한국선급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기타
모기업명	한국선급(사)

○ 이랜드 패션 인디아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의복, 잡화류
모기업명	이랜드 월드(주)

○ 에스케이 네트워크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도매, 소매업
모기업명	에스케이 네트워크

○ 에스티엑스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기타
모기업명	STX(주)

○ 무브맥스 시스템 로지스틱스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기타 서비스업
모기업명	무브맥스시스템

○ 동아에스티㈜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도매, 소매업
모기업명	동아쏘시오홀딩스㈜

○ 현대자동차음바이지사

진출연도	199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도매, 소매업
모기업명	현대자동차㈜

○ 유코카캐리어스 인디아

진출연도	2003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기타
모기업명	유코카캐리어스㈜

○ 농우씨드 인디아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농업, 임업, 어업
모기업명	농우바이오

○ 대흥인디아

진출형태	판매법인
------	------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대흥알앤티

○ 두루코퍼레이션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 미라벨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소매업
취급분야	화장품

○ 이랜드 어패럴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섬유, 피혁
모기업명	(주)이랜드월드

○ 인트라고 엔터프라이즈 인디아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판매법인
취급분야	도매, 소매업

○ 창원정공인디아법인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기계, 장비
모기업명	창원정공(주)

○ 미주정밀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소매업
모기업명	미주정밀(주)

○ 코콘인디아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기계, 장비
모기업명	한국콘베어(주)

○ 현대 글로벌비스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수업
모기업명	현대글로벌비스(주)

○ 현대 위아 인도법인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현대위아(주)

○ 현대모비스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현대모비스(주)

○ 현대모터인디아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현대자동차(주)

○ 현대해상화재보험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기타
모기업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화신인디아

진출연도	2002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화신(주)

○ 정인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지맥스(주)

○ 포레시아인디아-배기사업부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포레시아코리아(주)

○ 한일튜브 인디아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한일튜브

○ 코모스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SECO KOMOS(주)

○ 한일리어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서연이화(주)

○ 현대하이스코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현대제철(주)

○ 슈퍼겐코리아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판매, 생산법인
업종	모바일 악세서리
취급분야	모바일 악세서리
모기업명	슈피겐코리아

○ STRAFFIC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기차, 전철 부품
모기업명	STRAFFIC

○ TAIXIN 프린팅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산업용지, 인쇄용지
모기업명	고문당인쇄

○ 센추리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판매,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냉동, 냉열 장비
모기업명	센추리

○ 오리온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판매, 생산법인
업종	식품 제조업
취급분야	식료품 제조
모기업명	오리온

○ 국민은행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업
취급분야	금융업
모기업명	국민은행

○ 국도화학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화학 제조업
취급분야	화학
모기업명	국도화학

○ India SeAH Precision Metal Pvt.Ltd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비공개주식회사
업종	철강
취급분야	철강
모기업명	세아제강

○ KH VATEC INDIA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비공개주식회사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모바일 부품 제조
모기업명	KH 바텍

○ FINETECHWW GLOBAL INDIA PRIVATE LIMITED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비공개주식회사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금형제작
모기업명	파인테크

○ SO INDIA CONSTRUCTION MANAGEMENT PRIVATE LIMITED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비공개주식회사
업종	건설업
취급분야	건축설계 및 사무소
모기업명	삼우씨엠 건축사사무소

<자료원 : KOTRA 뉴델리무역관 자체조사>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1) 현지법인

현지법인은 인도의 회사법(companies Act)에 따라 인도 기업등록청(Registrar Of Companies)을 통해 설립되며, 사전 승인을 거쳐 인도 국내기업으로 인도기업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지닌다. 설립소요기간은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 단독 투자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

현재 인도에서는 현지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대부분의 제조업은 물론, 인프라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투자 개방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 원칙적으로 투자제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100% 허용된다.

○ 합작투자(Joint Venture)

현지 법인 설립을 결정한 후 100% 직접투자가 가능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별 사업 여건 등 경우에 따라서는 합작투자를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편적으로 해외 진출에 있어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인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종교 및 인종의 다양성과 문화의 이질성 등 우리나라와 다른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가 인도로, 오랜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파트너와 협조 관계가 원만하다는 확인을 바탕으로 합작을 해도 진출 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므로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경우라도 실제 의사 결정에 있어 파트너와의 갈등으로 결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흔하다. 자본재, 플랜트, 기술 등을 좋은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투자 진출의 경우, 이러한 합작투자의 문제점을 한번 더 고려해보아야 한다. 단독투자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FDI 규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합작투자만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인도 자국 산업 보호 육성을 위해 투자 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으로의 진출이 그러한 경우이다.

지사

1) 지사(Branch Office)

지사는 말 그대로 외국기업의 인도 지사로서의 지위로,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인도는 외국기업과 인도기업 간 법인세율에서 외국기업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지사 또한 당연히 법인세에 있어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세율(40%)을 적용받는다. 지사는 법인이 아닌 인도에 있는 외국기업으로 간주된다. 외국기업 지사의 활동은 인도 중앙은행에 의해 제한되며 지사의 역할은 본사를 대신한 구매 및 판매 에이전트 활동, 조사 활동, 수출입 업무의 수행, 인도기업과 기술 및 자본 협력 추진,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정보 기술 서비스 제공, 본사에서 공급한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으로 한정된다. 지사는 인도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으며,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지사 사무소는 물품의 제조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인도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사는 세금을 납부한 후 발생한 이익을 인도 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으나 사전에 인도 중앙 은행의 외국환 관리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인도에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도 기업법에 따라 규정된 서류를 사무소가 설치될 주정부의 기업 등록청(ROC)과 뉴델리에 있는 기업 등록청 본청에 각각 제출 해야 하며, 지사가 등록된 이후 매년 회계서류를 기업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1) 연락사무소(Liaison 또는 Representative Office)

외국기업들의 경우 인도와의 비즈니스를 개시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 보통이나 인도에서 직접 상거래를 수행할 수는 없다. 연락사무소는 사업 기회의 발굴이나 제품 홍보 등을 위하여 개설되며 인도에서 일체의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매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연락사무소는 커미션을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사무실에서 집행하는 모든 비용은 해외에 있는 본사에서 송금되어야 하며 연락사무실을 철수할 때에도 인도로부터의 자금 인출은 일체 금지된다. 인도에서의 연락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FEMA)은 인도중앙은행은 연락사무소 설립을 승인하고, 승인 기간은 최초 설립 후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기업등록청(ROC)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정관, 재무제표 그리고 인도에 사무실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인도 기업부의 회계규정의 완화로 인하여 연락사무소는 전체 재무제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인도 회사법에서 명시한 손익 계산서만 제출하면 된다. 연락사무소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사업 및 활동의 범위에 따라 정해진다.

연락사무소와 지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지사의 경우 영업 행위가 가능한 반면 연락사무소는 단순 연락 업무 또는 시장조사 등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지법인은 통상 진출 국가의 국내기업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법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현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연히 현지 법인 설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100%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이라 할지라도 인도 국내 기업으로 간주된다. 국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인도의 경우 영업상의 측면이나 조세부담, 기타 국내법 및 제도의 적용에 있어 지사와 현지법인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지법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현지법인의 활동에 관계된 채권자, 노동자 등 이해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진다. 그러한 제한이 주어지는 만큼 법인은 거래, 자금 조달 등에 있어 지사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된다. 한편 인도정부는 지사는 제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업 투자 진출의 경우 현지법인 설립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1) 공개회사(주식회사)

공개회사란 주식의 공모를 위해 기업공개를 한 회사나, 향후 주식 공모를 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를 말한다. 2013년 회사법 개정안으로 최소 자본금 기준은 폐지되었고, 7인 이상의 주주와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하며, 이사 중 최소 1인은 회계연도 기준 인도에서 182일 이상 체류한 자(인도인, 외국인 모두)이어야 한다. 주주의 최대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공개회사는 상장회사와 비상장 회사로 나뉜다. 또한 이사회 3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공개회사의 이사회에 반드시 여성 사외이사를 포함하고, 공개회사의 자회사가 비공개회사일지라도 공개회사 기준을 적용받는다.

2) 비공개회사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인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는 한국에서의 회사 형태로 보면, 상장을 전제하지 않는 주식회사와 같다. 2013년 회사법 개정안으로 최소 자본금 기준은 폐지되었고, 설립 시 2인 이상의 주주와 2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하며, 최소 1인은 회계연도 기준 인도에서 182일 이상 체류한 자(인도인, 외국인 모두)이어야 한다. 주주는 최대 200명을 넘을 수 없다. 이사 중 최소 1인은 당 회계연도 내 인도에서 182일 이상 체류한 인도인 혹은 외국인이어야 한다. 비공개회사가 공개회사에 비해 회사 운영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임에 따라, 인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대다수는 비공개회사(Private Limited)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3) 법인설립 절차 및 비용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진출지역을 선정하고, 회계연도 기준 182일 인도에서 거주한 자를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통 법인을 설립하는데 서류 절차를 통과한다면, 법인설립증은 1~3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

4) 특징

법인세 납부 및 주식 배당에 있어서 세금을 한 번 더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 이슈가 있다. 회사를 주식 시장에 상장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 유리하다.

유한책임회사

1) 파트너십(Partnership)

인도에서의 파트너십은 파트너십법(Partnership Act)에 규정되어 있다. 파트너들은 파트너십 계약으로 합의된 바에 따라 모든 수익을 공동으로 향유하며, 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 및 각각의 파트너로서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외국인인 및 비거주자는 인도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는 파트너십 형태로 인도에 투자할 수 없다.

2)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은 인도기업으로 간주되며, 회사와 파트너십의 특성이 섞여있는 법인 형태로서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없다. 각 파트너가 지분을 소유하고 법인을 운영하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기에 소유와 경영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유한책임파트너십은 법인과 다르게 인도 회사법에 적용받지 않고, 별도의 유한책임파트너십법(LLP Act)에 적용받는다. 유한책임파트너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파트너가 필요하고, 이 중 1인은 인도에 거주해야 한다.

인도에는 유한책임파트너십 형태가 존재하며, 인도에서의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와 파트너십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이며, LLP법(LLP Act)에 의해 규정된다. LLP의 특성은 영속성을 지닌 법인이며, 파트너들을 분리하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라는 점이다. 유한책임파트너십을 설립하기 위해 파트너들은 회사의 경우 정관과 유사한 설립서류(incorporation document)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서류의 제출에 따라 유한책임파트너십으로서의 법인이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법인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 기업등록청(RoC)에 의해 발행된다. 외국인투자정책에 따라 100%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산업분야에서는 유한책임파트너십을 통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개인사업자

1인 회사의 형태는 주주가 단 1명이어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단 주주는 회계연도 기준 인도에서 182일 이상 체류한 인도인이어야만 한다. 외국인이 회계연도 기준 182일 이상 인도에 체류한 경우에는 1인 회사의 등기이사는 될 수 있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 EY

전화번호	91-124-443-4850
주소	Golf View Corporate Tower B Sector 42, sector road gurugram- 122002, Haryana, India
홈페이지	http://www.ey.com
이메일	jaewon.chang@in.ey.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장재원 변호사
비고	인도 총괄 및 뉴델리 지사 장재원 변호사(상무), 권용우 회계사, 첸나이 지사 정원영 부장

○ KPMG

전화번호	91-124-719-1351
주소	Building No. 10, Tower B, 8th Floor, DLF Cyber City, Phase – II, Gurgaon, Haryana
홈페이지	http://www.kpmg.com
이메일	jkim107@kr.kpmg.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김지영 회계사
비고	뉴델리 지사 김지영 회계사, 첸나이/벵갈루루 지사 이영민 회계사

○ BUDDTREE

전화번호	91-124-668-8194
주소	One Horizon Centre, Level 18, Golf course road, DLF Phase V, gurugaon, Haryana, India
홈페이지	http://www.buddtree.com
이메일	you@buddtree.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지혜 변호사
비고	유지혜 변호사(코리안 데스크)

<자료원 : EY, Deloitte, PwC, KPMG>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1) 휴업 및 등록말소

○ 휴업

인도 회사법에 따라 사업 운영의 잠정적인 중단을 위한 법인의 휴면 상태를 허용한다. 휴면기업(Dormant Company)는 인도 기업등록부 기록에서 잠정적인 휴업상태로 등록된 기업을 의미하며, 어떠한 사업활동도 수행하지 않고, 회사법상의 의무도 일부 면제될 수 있다. 휴면기업은 기업 자산이나 지적재산을 차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 방패막이로 보유하는 경우 장점이 될 수 있다. 휴면기업은 회사법에 따라 회사의 중대한 회계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 회사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인도 기업부에 휴업을 신청할 수 있다.

○ 등록말소

인도기업은 자발적 또는 인도 기업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등록말소(Striking Off)가 될 수 있다. 법인 설립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2년간 어떠한 영업을 하지 않고, 해당 기간 내에 휴면 기업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어떠한 신청도 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회사는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2) 법인철수 및 청산 절차 구분

○ 법원에 의한 청산

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채권자, 회사(채무자), 법원의 청산관재인(official liquidator) 등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회사의 청산을 명할 수 있다.

○ 주주에 의한 자발적 청산

회사가 채무를 모두 변제할 능력이 있으며, 자발적 청산을 원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청산인과 그의 보수가 결정되며 청산인의 임기시작과 더불어 회사의 대표를 비롯한 경영층은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

청산인은 자산의 이전 및 매각을 통하여 부채를 정리하게 되며 청산 절차가 1년을 초과하여 지속될 경우 매년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또한 마지막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은 회계장부에 대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역 법원에 부속된 청산사무관과 회사등록계(registrar of company)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청산사무관에게 추가적인 조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상이 없을 경우 법원은 청산을 명령하게 된다.

○ 채권자에 의한 청산

회사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청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청산절차에 대한 관리 및 회계장부의 승인은 채권자가 담당하고 채권자들은 5인 이상의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단을 구성할 수 있다.

3) 법인철수 및 청산 관련 기타 사항

○ 종업원 해고

100명 이상 고용기업은 사업장 폐쇄 시 2개월 전에 정부에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다양한 노동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장 상황에 맞게 법률을 검토하여야 한다.

- 청산금 회수

인도 내 외국회사의 지점/연락사무소의 청산절차의 송금은 RBI 승인을 조건으로 허용되며, 인도 내 외국회사 프로젝트 사무소의 청산대금 송금은 회사의 필요한 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자동 승인된다. 단, 지사의 청산 시에는 청산대금의 본국 송금을 인도중앙은행이 공인한 거래 은행을 통해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오피스와는 구별된다. 인도에 투자한 외국자본이 송환을 원칙으로 투자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자본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 본국으로 송환 가능하다. 또한 주식 펀드의 경우 주주의 양도 또는 청산 시에만 회수될 수 있으며, 제한된 바이 백(buy-back) 조항은 회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감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73.76INR (2020년 11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01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51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15
비고	<p>인도 노동청에 따르면 미숙련, 준숙련, 숙련 노동자로 나누어 임금을 표기해 두었다. 인도 전역의 평균 임금은 8,080INR~143,000INR(US\$ 109.5~US\$ 1,938.6/월)으로 지역별로 임금수준이 상이하여 인도 노동부의 10월 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숙련 : INR 407/일 - 준숙련 : INR 445/일 - 숙련 노동자 : INR 483/일 - 고속련 노동자 : INR 535/일 ○ 건설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숙련 : INR 427/일 - 준숙련 : INR 534/일 - 숙련 노동자 : INR 639/일 - 고속련 노동자 : INR 745/일 ○ 광산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숙련 : INR 639/일 - 준숙련 : INR 707/일 - 숙련 노동자 : INR 777/일 - 고속련 노동자 : INR 845/일 				

<자료원 : 인도 노동청>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서면, 구두 또는 묵시적 계약 등 모든 형태의 고용계약에는 계약 법상의 일반 원칙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입사 일자, 보수, 수습 기간, 업무 범위, 교육 및 수행 규칙, 임무변경, 연금, 퇴직, 비밀유지, 경쟁금지 조항 및 기타 핵심 관련 조건들과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계약의 내용은 상업시설(상점 및 상업시설법)인지 공장(공장법)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다르며 해당 직원이 근로자(Workmen)인지 관리자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특히 50인 이상의 상업시설, 100인 이상의 공장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고용법(Industrial Employment(Standing Orders) Act)이 적용되어 (i) 고용조건의 서면작성 의무화; (ii) 입사 일자, 보수, 수습 기간, 업무 범위 및 변경, 교육 및 수행 규칙, 연금, 퇴직, 비밀유지, 경쟁금지 조항 등 필수 조항 의무화; (iii) 인도 노동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 최소 혜택을 무시한 고용계약서를 무효로 간주하는 등 근로자를 더욱 보호하고 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상여금지급법(Payment of Bonus Act, 1965)에서 규정하고 있다. (1) 모든 공장, (2) 회계연도 중 20명 이상을 고용한 기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당 해에 최소 30일을 근무하고 월 21,000루피(기본수당+DA)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만 자격이 된다. 급여의 8.33%를 최소 상여금으로 지급해야하며 급여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계절성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소 30일을 근무했다면 상여금의 지급 자격을 가지며 견습생은 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상여금은 최소임금을 7,000루피로 간주하여 상여금율에 따라 산출한다.

근로시간

공장법(The Factories Act, 1948)은 10인 이상 전력 사용 제조공장, 20인 이상 전력비 사용 제조공장에 대해 성인 근로자의 경우 일일 9시간, 주당 48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100인 이상의 공장의 경우 산업고용법을 적용하며 주별로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50인 이상의 상업시설에는 주법인 상점 및 상업시설법이 각각 따로 적용된다.

1일 9시간을 초과하거나 주당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무 시간에 대하여 두 배의 임금이 지급된다.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10시간 반 이상을 근무할 수 없으나 주 정부는 ①긴급 수리 종사자, ②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업무 종사자, ③업무 자체가 단속적이어서 법정 이상의 휴식시간을 갖는 종업원, ④기술적 사유로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의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초과근무의 범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지시하였거나, 승낙하였을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통상적으로 회사 내 인사규정(HR Policy) 또는 추가수당정책(Overtime Policy)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근로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초과 근무가 아니라면 일요일 근무나 야간 근무에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공휴일 근무는 통상 100% 수당이 지급되나 근로자들은 대체로 유급 휴가로 대체하는 것을 선호한다. 산업이나 직종에 따라 표준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근로 시간 관련 규정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휴가

인도의 법정 공휴일은 중앙정부 및 주정부에 의해 공지되며, 통상적으로 연간 10~15일의 공휴일이 있다. 또한 휴무일 공휴일과는 별도로 연간 24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20일당 1일의 유급 휴가가 지급되며 연간 7일의 유급 병가가 허용된다. 또한 개인 경조사 등을 위해 7~10일의 임의 휴가가 주어진다. 여성 근로자는 12주 동안 출산휴가를 보장받는다.

해고

산업분쟁법(Industrial Dispute Act, 1947)에 따르면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일시 해고 시에 해고 기간에 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감축 시에는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하며 근무 연수만큼의 15일치의 급여가 감축보상금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모디 정부는 종업원 해고 시 고용주에게 대체 근무자를 소개해줄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본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퇴직금

퇴직금법(Payment of Gratuity Act, 1972)은 근로자의 사임, 서비스의 종료 또는 퇴직 시 지불하는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인 이상 고용한 사업체에 적용된다.

퇴직금은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고용종료 또는 퇴사할 때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5년 이하를 근무한 근로자라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15일치 급여(가장 최근에 수령한 급여) x 근무연수 이다.

노사관계

인도는 노동쟁의와 관련한 다양한 사법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도의 노무소송은 조정관에서 시작하여 대법원에서 종결된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소송/사건은 해당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제기되며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에 관련된 소송은 노동법원, 산업재판소, 국가 재판소, 지역법원에서 제기된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근로자국가보험제도(ESIC, The Employee's State Insurance Scheme)은 근로자국가보험법(Employees State Insurance Act, 1948)에 의해 통합된 사회보험제도로써 가족 의료혜택(Medical benefits of family), 부양 혜택(Dependent benefits) 그리고 사망할 경우 받는 혜택(Funeral benefits or death benefits)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ESIC가 한국의 국영건강보험제도와 같은 건강보험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1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도로 교통, 호텔, 레스토랑, 영화관, 신문, 상점, 교육 및 의료 기관 등이 대상이다. 보너스, 유급휴가보상액, 팁을 제외한 매월 21,000루피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고용주는 임금의 4.75%, 근로자들은 임금의 1.75%를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근로자국가보험제도(ESIC, The Employees State Insurance Scheme)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인도는 고용보험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상법(Workmen compensation Act, 1923)으로 사망이나 신체적 장애를 수발하는 고용 기간 또는 사고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 근로자 또는 그들의 부양가족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고용주는 자신의 사업장에 적어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어떤 특정한 직업병이 발병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본 법에 의한 책임은 '보험'이라 할 수 없다. 본 법에 따라 사망,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한국과 같이 평상시 보험료를 납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기에 한국과 같은 산재보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보상금액은 장애의 성격, 장애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상해가 있는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서 다양하다.

국민연금

일종의 국민연금제도로써 EPF(Employees Provident Fund) 20인 이상 사업장(영화관의 경우 5인 이상)의 월 급여 15,000루피 이하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급여의 12%를 노동자와 사측이 각각 부담한다.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1) 법인세

법인 소득에서 원자재 매입, 임금, 합리적인 수준의 상여금, 임대료, 보험금, 로열티 지급액, 이자, 배당금, 리스대금, 세금(판매세, 시영(市營)세, 재산세, 도로세, 관세), 감가상각, R&D 관련 비용 등을 제한 금액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인도법인과 외국법인 간에 법인세율에는 차이가 있다. 외국기업이 인도에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인도 내국법인으로 간주되나, 지사, 프로젝트 사무소의 경우는 외국법인으로 간주된다.

(1) 내국법인

2019년 9월 20일 인도 재무장관은 기존 법인세율에 추가적으로 연 매출 규모와 상관없는 22% 적용 구간을 추가하였고, 2019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제조시설을 설립한 경우 15%의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매출액 무관: 기본세율 22% * Surcharge 10% * 추가세 4% = 25.168%
- 신규 제조업(2023년 3월 31일까지 제조시설 설립): 기본세율 15% * Surcharge 10% * 추가세 4% = 17.16%
- 연매출 40억 루피 미만: 기본세율 25% * Surcharge 7%, 12%(차등적용) * 추가세 4% = 26%, 27.82%, 29.12%
- 연매출 40억 루피 이상: 기본세율 30% * Surcharge 7%, 12%(차등적용) * 추가세 4% = 31.2%, 33.384%, 34.944%
- 유한책임파트너십: 기본세율 30% * Surcharge 10% * 추가세 4% = 34.32%

(2) 외국법인

외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인도 지점은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세율 구간별로 2%에서 5%의 surcharge, 4%의 건강교육세(health and education cess)가 추가된다. 이에 건강교육세가 반영된 유효세율은 1) 과세소득 천만루피 미만인 경우에는 41.6%, 2) 과세소득 천만루피 초과 일억루피 이하인 경우 42.43% 3) 그리고 일억 루피 초과인 경우 43.68%이 적용된다. 또한, 외국법인 및 지점은 내국기업과 달리 배당의 형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분배세에 해당하는 세율차이를 두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별도로, 법인세 산정시 회사의 장부상 이익을 기준으로 최저한세(MAT)율 18.5% (추가 Surcharge 및 Cess 별도)가 고려된다.

개인소득세

개인 소득세는 소득 정도에 따라 누진 과세된다. 세율은 소득에 따라 5%, 20%, 50%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과세를 위한 거주자의 범위는 당해 회계연도 중 인도 내에 182일 이상 머무는 경우, 또는 지난 4년간 합쳐서 365일 이상을 인도 내 체재한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인도에 60일 이상 머문 경우는 거주자로 간주돼 개인소득세가 과세된다. 2019년 모디정부 2기의 개인소득세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소득구간별로 5백만 루피 이하 31.2%, 5백만 루피 초과 1억 루피 이하 34.32%, 1억 루피 초과 2억 루피 이하 35.88%, 2억 루피 초과 5억 루피 이하 39%, 5억 루피 초과 42.744%이다.

부가가치세

통합간접세(GST)

GST는 Goods and Services Tax의 약자로, 인도정부가 2017년 7월 1일 도입한 간접세 체계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다. 과거 인도는 주별로 재화 및 서비스에 부과하던 간접세가 상이하였는데,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도 전체가 하나의 간접세로 통합되었다. 2021년 1월 1일부터 E-invoice(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으로 기존 최근 3회계연도 중 1회 이상 연 매출 50억 루피 이상을 넘는 경우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적용대상자였으나 향후 10억 루피로 기준이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GST는 1,300개 이상의 재화와 500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0%, 5%, 12%, 18%, 28%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필수품일 수록 세율이 낮고 사치재의 경우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형태이다. 2017년 7월 1일 GST 시행 이후 간접세 세수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인도 정부는 28%의 고세율 구간의 품목 수를 줄이고 12%, 18% 적용 품목의 수를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GST 위원회(GST Council)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1) 세율별 적용 품목

- 면세(0%): 빵, 소금,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밀가루 등 생필품
- 5%: 의약품, 커피, 차, 석탄, 등유 등
- 12%: 가공육, 치즈, 과일주스, 치약, 휴대폰 등
- 18%: 아이스크림, 카메라, 스피커, 모니터, 철강 등 재화
- 28%: 화장품, 담배, 자동차, TV, 세탁기, 초콜릿 등 사치품

(2) 통합간접세(GST) 과세시스템

- CGST: Central Excise Tax, Various Cess and Curcharges
- SGST: Value added Tax, Entry Tax, Luxury Tax, Entertainment Tax, Tax on the lottery, betting, gambling
- IGST: Special Additional Duties of Customs, Counterveiling Duties, Central Sales Tax

특별소비세

인도에 특별소비세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주류세가 있으나, 딜로이트 인디아와 PwC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집계된 자료가 없음.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1) 인도의 외환제도 및 환율제도

(1) 외국환관리법

인도에서의 외환거래는 2000년 6월 1일부로 발효된 외국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에 따라 인도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에서 관리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FEMA, 1999)은 이전의 외환규제법(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1993)을 변화된 대내외 환경에 맞추어 개정하면서 이름이 바뀐 제도이며 FERA는 FERA of 1973, FERA of 1947로 거슬러 올라간다.

(2) 환율제도

인도는 1993년부터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IMF에서는 자율변동환율 제도를 '변동폭의 제한 없이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며, 외환 당국의 시장개입이 최근 6개월간 3회 이내로서 개입내역을 공개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인도중앙은행(RBI)에서는 급격한 환율변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시장개입을 한다고 대외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더 자주 시장개입을 하고 있어 IMF의 기준에서의 인도 환율제도는 자율변동환율제가 아닌 관리변동환율제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인도 환율제도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전에는 영국 파운드화에 연계된 pegged 고정환율제(페그제)가 사용되었고 독립 이후 1947년에서 1971년까지는 금과 영국 파운드화에 연계된 고정환율제도(Par Value System)가 사용되었다. 1971년 이후에는 미국 달러화와 영국 파운드화에 연계된 고정환율제도를 사용하다가 1976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하면서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하자 화폐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들의 가중평균환율에 연계하고 상하한 5% 범위에서의 변동을 허용하는 통화 바스켓 연계 고정환율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1991년에서 1993년까지는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을 위한 과도기로서 이중환율제도를 사용하였다.

이중환율제도에서는 40%는 인도중앙은행에서 고시한 공식환율로, 60%는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환율로 거래되도록 하였으며 공식환율은 주로 원유, 석유, 비료 등 주요 수입품목의 결제에 적용되었다. 1993년 인도중앙은행에서 공식환율 고시를 폐지함에 따라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고 상하한 변동폭의 제한이 없는 변동환율제가 도입되었다.

2) 인도의 외환시장

인도에서의 외환거래는 인도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받은 은행(Authorized Dealer Category, 통칭 AD Bank)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도는 외환보유고, 대외부채 등 대외 거시건전성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외환거래를 통제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외환거래(외화의 매입/매도)는 그 거래의 목적과 증빙자료의 제출이 요구된다.

외화계좌의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NRI(Non Resident Indian, 인도인 비거주자) 등 허용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개설이 제한되며 기업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수출기업만 개설할 수 있다. 수출기업이 개설한 외화계좌(EEFC, Exchange Earners Foreign Currency)의 경우 수출의 대가로 영수한 외화만 입금할 수 있으며 입금된 외화는 일정 기간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화의 보유도 제한되어 있다. (현재 규정으로는 다음 달 말까지 보육 가능하며,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AD 은행의 승인 필요)

인도 루피화는 원화와 마찬가지로 역외에서는 거래가 제한되는 ND(Non Deliverable) 통화로 분류된다. 따라서 루피화로 해외송금/수취는 역외 결제가 불가하므로 일반적으로 제한되나, 신한은행을 비롯하여 인도에 진출한 일부 한국계 은행들을 통하여 한국에서 인도로

루피화로 송금이 가능하며, 인도에서 한국으로 원화로 송금도 가능하다. 인도 외환시장은 09시부터 17시까지 거래되며 인도 중앙은행에 서는 대고객 거래를 16시 30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일일 거래량은 현물환 기준 하루평균 100억 달러 내외로 유동성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며 선물환 및 교환시장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일자의 거래량 가중평균 환율을 다음날 1회차 매매기준율로 고시하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일일 평균환율은 고시 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장중 오후 1시 30분에 당일자 레퍼런스 환율(Reference Rate, 통칭 Fixing rate)을 고시하고 장 마감 후에는 당일 자 마감환율을 고시하고 있다.

※ Reference Rate: www.fbil.org.in에서 오후 1시 30분 이후 확인 가능

외환 규제

1) 외화송금 관련 규제

인도의 외국환관리 규정은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예외적용 항목들이 많아 상당히 복잡하고 규정 개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으로, 다음의 내용은 개인 및 기업의 외화송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므로 실제 거래 전 관련 사항을 거래은행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개인의 외화송금

인도는 2004년 Liberalized Remittance Scheme(LRS)을 도입하여 개인인 거주자의 허용된 경상/자본거래에 대한 해외송금 허용 한도를 관리하고 있다. LRS 한도는 경제상황에 따라 변경을 해오고 있으며 2015년 5월 LRS limit을 USD 250,000으로 확대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개인인 거주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April-March)으로 연간USD 250,000까지 AD 은행을 통해 증빙을 제출하고 송금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RBI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개인의 허용된 경상거래는 개인적인 방문, 증여/기부, 해외취업, 이민, 출장, 의료목적 방문, 유학 등이 포함되며, 개인의 허용된 자본거래는 해외소재 은행에 외화계좌 개설, 해외 부동산 매입, 해외투자, 해외 자회사 설립, 비거주자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대여 등이 포함된다.

해외여행 목적의 경우에는 1인당 USD 3,000 이내에서 현찰로 환전이 가능하다. (여권, 비자, 항공권 등 여행 증빙 필요) 인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의 해외송금은 인도 영구거주자가 아닌 인도 거주자로서 파키스탄 제외한 외국의 시민권자인 경우 세금 등 공제항목을 제외한 Net Salary 범위에서 송금이 가능하다. (TDS Certificate 등 급여 증빙 필요)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자금의 범위 이내에서의 재송금 또한 가능하다.

(2) 기업의 외화송금 (수출대금 영수)

사후송금방식인 경우 수출대금은 선적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제토록 규제하고 있으며 인도 밖의 보세창고로 수출한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결제되어야 한다. 사전송금방식인 경우 수출자는 수출대금 영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품을 선적해야 하며, 사전 송금액에 대한 이자를 적용하는 경우 이자율은 LIBOR+100bp를 초과할 수 없다. 선적서류 및 수출 관련 서류들은 사전송금을 수취한 AD은행을 통해서 제출되어야 하며, 수출자가 수출대금 영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부 혹은 전부를 선적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대금의 일부 혹은 전액 반환은 RBI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AD은행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이를 EDPMS(Export Data Processing and Monitoring System)에 등록해야 하며, 세관에서 등록하는 수출정보와 매칭하여 해당 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과거 3년 이상의 양호한 거래기록을 보유한 수출자가 장기 공급계약에 대한 사전송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AD 은행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승인을 받고 수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최소불능 공급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수출자는 그러한 공급계약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수취한 자금은 부실자산(NPA)으로 분류된 루피화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미화 1억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RBI에 신고되어야 한다. 생산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상품의 수출로서 수출계약서에 선적일이 사전송금 수취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시점으로 되어있는 경우 AD은행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3) 기업의 외화송금 (수입대금 결제)

사후송금방식의 경우 수입대금은 선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제해야 한다. 하지만 품질, 수량, 계약조건 미이행 등으로 인한 분쟁, 소송, 재무적 어려움 등으로 결제가 지연된 경우, AD은행은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송금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선적일로부터 1년 초과한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 수입건은 감독기관으로부터 조사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결제 시점 현재 미결제 수입 총잔액이 미화 1백만 불을 초과하거나 직전 2년 평균 수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RBI 승인 후 송금이 가능하다.

사전송금방식의 경우 송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자본재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수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수입자는 송금일로부터 6개월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입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송금이 여러 건으로 분할되어 송금된 경우에는 마지막 송금일을 기준으로 한다.

AD은행은 수입결제 해외송금에 대한 정보를 IDPMS(Import Data Processing and Monitoring System)에 등록하고 세관으로부터 등록된 수입통관 정보와 매칭하여 해당 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5년 이내의 지연지급약정(Deferred payment arrangements)이 있는 경우는 trade credit으로 간주한다.

(4) 이익(잉여)금의 송금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는 상업활동이 제한되므로 본국으로의 이익금 송금이 불가하며 사무소 청산(closure)의 경우에만 송금이 가능하다. 연락사무소는 AD은행을 통해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으며 이때 입금의 경우 경비목적으로 해외 본사로부터의 자금 수취, 보증금의 반환, 세금 환급, 자산매각 자금의 경우에만 허용되며, 지급의 경우 현지 경비지출을 위한 자금으로 쓰일 때만 허용된다.

프로젝트오피스(Project Office)는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된 사무소로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 종료 시 잉여금 송금 가능하다. 프로젝트의 종결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프로젝트 종결 전 송금이 필요한 경우 AD은행의 승인 후 송금 가능(정상적인 종결에 문제가 없다는 회계감사인의 확인서 및 PO의 각서 제출)하다. 프로젝트오피스는 AD은행을 통해 외화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루피화와 미 달러화로 2개의 계좌 개설이 허용된다. 허용되는 입금거래는 해외 본사로부터의 송금, Project Sanctioning Authority로부터 외화수취 등이고, 지급은 프로젝트 관련 지출만 가능하다.

지점(Branch Office)은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40%)납부 후 송금 가능하다.

단독투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는 배당의 형태로 송금하는 것과 자사주 매입의 형태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배당은 법인 소득세(30%)와 배당 분배세(15%)를 납부한 후 송금이 가능하며, 자사주 매입은 법인소득세(30%)와 재매입세(20%)를 납부한 후 송금 가능하다.

(5) 자본금 송금

이전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이 10만 루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자본금 관련 제한사항이 있었으나 2015년에 관련 규정이 폐지되어 현재로서는 한도 관련 제한사항은 없다.

자본금은 정관상 기재되는 명목자본금과 실제로 납부하는 납부자본금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명목자본금을 높게 책정하고 실제로는 소액만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명목자본금 규모에 비례해서 등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중장기 사용 계획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금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60일 이내에 송금이 완료되어야 하고, 자본금 수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식이 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식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IRMS(RBI(인도중앙은행) 운영 포털사이트)를 통해 FC-GPR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본금 수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식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기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본금을 다시 반환 송금하여야 한다.

(6) 기타 RBI(인도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기부: 과거 3개년 외환소득의 1% 또는 USD 5,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 커미션 지급: 거래 건 별 해외송금 수취금액의 5% 또는 USD 25,000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설립 전 비용의 반환: 인도로 투자된 자금의 5% 또는 USD 100,000을 초과하는 경우
- 컨설팅 서비스 비용의 지급: 계약 건당 USD 1,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인프라 프로젝트 관련인 경우 USD 10,000,000)

2) 자금조달(역외대출)

(1) 인도에서의 자금조달은 크게 인도 내 금융기관을 통한 현지금융과 인도 밖의 금융기관 또는 본사/관계사를 통한 역외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도에서 외화대출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금융 상품이 있으며, 그 외에는 모두 역외금융을 통해 이루어진다.

(2) 역외금융(External Commercial Borrowing) 주요 내용

- 차입통화: USD, EUR 등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국통화 및 INR
- ECB 종류: 은행대출, 3년 초과 무역금융(Buyer's/Supplier's credit), 변동/고정금리부 유가증권, 전환/교환사채
- 취급가능 차입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받을 수 있는 모든 회사(Entity) 및 Port Trust, SEZ(Special Economic Zone) 소재 기업, micro-finance 회사, 협동조합/신탁 등
- 취급가능 대여자: 대여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USCO) 회원국의 거주자이어야 한다. 해외 은행, 인도은행의 해외지점/자회사, 차입자의 본사/관계사(Foreign equity holder) 등
- 최소평균 만기: 최소평균만기(MAMP) 3년 이상 (단, 제조업 영위 기업은 회계연도 기준 5백만 불 이내 1년 이상). 본사/관계사* ECB로서 운전자금, 일반기업자금 또는 루피대출 상환 목적인 경우 5년 이상
- 차입비용 상한: All-in-Cost* 기준 기준금리(Benchmark) + 450bp(Benchmark: 6M Libor, 6M EURIBOR 등 해당 통화 6개월물, INR의 경우 해당 만기 국채수익률)
- 자금용도 제한
 - Real estate activities(단, 기존시설 확장/현대화/새 프로젝트 등을 위한 산업용 토지의 매매/장기임대는 가능)
 - 자금시장/주식/지분 투자
 - 운전자금, 일반 기업자금, 루피화 대출 상환 (단, 본사/관계사 ECB인 경우 가능)
- 한도/차입비율: 회계연도 기준 USD 750백만 이하 자동승인(Automatic route)이나 대출 취급 전 LRN 발급 필요. 본사 차입 외화 ECB인 경우 ECB 채무와 자본비율 7:1 이내로 제한(총 잔액 5백만불 이하 적용 제외)
-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대출계약(Loan Agreement) 체결 후 7영업일 이내 Form ECB를 RBI에 제출해야한다. (LRN 발급신청) ECB liability-equity ratio 산출 시, INR ECB 제외한 모든 ECB의 잔액을 포함하고 equity는 최근 감사보고서 상의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과 이익잉여금(free reserves)을 합산해야 한다. 외화에서 외화 혹은 외화에서 루피로 차입통화는 변경 가능하나 루피에서 외화로 는 변경이 불가하다.

9.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인도는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법, 지리적 표시법, 저작권법 등의 지식재산에 관한 개별법령을 두어 각각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실용신안은 따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

신규하고, 진보(또는 비자명성)하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으로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허를 통해 보호된다.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한편, 인도는 발명이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경우에 가출원이 허용된다. 발명자가 완전한 명세서를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명세서에서 개시된 발명에 대해서는 가명세서의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도형, 브랜드, 헤딩, 라벨, 티켓, 명칭, 서명, 말, 문자, 숫자, 상품의 형상, 포장, 색채의 조합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는 것인 표장이 상품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경우 상표로 보호된다. 또한, 인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상표의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유사 상표에 대해서 연속 상표로써 연속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상표의 보호기간은 10년이고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디자인이란 공예적, 기계적 혹은 공업적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해 2차원 혹은 3차원 형태로 물품에 적용되는 선 또는 색채의 형상, 윤곽, 모양, 장식 혹은 구성의 특징에 한정되는 것이며, 제품에 대하여 시각에 호소하고, 시각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것으로, 신규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은 디자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 등록의 존속기간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다. 최초의 기간은 10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한 경우 5년간 연장될 수 있다.

한편, 인도의 저작권은 표현 형식과 관계없이 문학, 음악, 미술, 건축, 연극 및 영화의 창작물 등의 저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60년간 존속한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인도의 인구는 13억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5~2030년 기간 동안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절반(45.24%)가량이 24세 이하이며, 남성의 평균연령은 27.2세, 여성은 28.6세로 저연령대 인구 비중이 압도적이다. 1인당 GDP는 2019년 기준 2,139달러에 불과하나, 국가별 GDP 순위는 프랑스(2조 7,716억 달러)를 제치고 3조 2,021억 달러로 5위를 기록했다.

인도 국가경제연구원(NCAER)은 2009/2010 회계연도 기준 연소득 340,000~1,700,000루피 (당시 환율 기준 약 7,555~3만 7,777달러) 구간의 가구를 중산층으로 간주하였는데, 2025년까지 이들 중산층 인구가 5억 4,700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며 2018년 하반기 기준 3억 6,400만 명으로 파악되었다. 이 수치는 중산층 인구는 많으나 전체인구대비 약 39%에 정도의 수치로 타 국가들처럼 저가물품과 고가물품에 대해 편향적이다.

딜로이트 소비자 보고서(Deloitte report Unravelling the Indian Consumer, 2019. 2.)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밀레니엄 세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약 4억 4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밀레니엄 세대는 전체 노동 및 소비 분야에서 약 48%를 차지하며, 다수의 밀레니엄 세대는 소매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 접근성 측면에서 도시화율은 주요한 지표인데, 인도의 도시화율은 2019년 기준 34.47%에 불과하다. 다만, 인도정부의 102조 루피 규모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NIP)에 따라 민관합작투자사업(PPP) 장려 및 5개의 스마트 시티 개발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어, 도시 인구의 숫자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원 : 인도국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statista>

소비 성향

1) 자연친화 제품 소비 경향

인도는 13억의 인구나 29개의 주로 구성된 거대 국가이며, 공식 언어만 23개에 이르는 등 계층별, 지역별 구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으로 인도 전체 소비자의 성향을 재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타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채식주의자의 인구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종교적 특성으로 인해 자연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 채식주의

- 인도정부(2014)에 따르면 인도 내 채식주의자의 비중은 28.85%이며, 나머지는 비 채식주의자로 조사되었다. 채식주의자 비중의 지역별 편차가 있어, 탈렌가나 주의 경우 비 채식주의자의 비중이 98.7%에 이르며, 웨스트벵갈 98.55%, 오디샤 97.35%, 케랄라 97% 등 주요 동부와 남부 지역에 위치한 지역의 비 채식주의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이에 반해 라자스탄(74.90%), 하리아나(69.25%), 편잡(66.75%), 구자라트(60.95%)와 같은 북서부 지역의 경우 채식주의자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인도의 모든 식품에는 채식(Veg), 비 채식(Non-Veg) 여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미량이라도 동물성 원료가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면 라벨링 규정 위반이 되고 채식을 선호하는 인도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 비 채식 원료로 제작되는 한국산 식품의 경우 동식물성 원료 표기에 유의해야 한다.

○ 자연제품에 대한 선호

- 대부분의 인도인은 자연 친화적이며 생명을 중시한다. 전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힌두교와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기타 종교의 경우,

깨끗한 것(정)과 깨끗하지 않은 것(부정)을 엄격히 나누고 항상 '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교육을 한다. 이런 점에서 자연재료가 아닌 화학 재료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크고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의 품목에 대해 특히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 인도에서 잘 팔리는 제품의 경우 'Organic,' 'Ayurveda'와 같이 구성성분의 천연성이나 제조과정상의 자연친화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화학 공장의 폐수 유출이나 납이 들어간 식품이 판매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일반 국민의 자연제품에 대한 선호와 인식은 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2) 외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

주요 제조업 관련 글로벌 기업의 대부분이 인도에 진출해 있다. 자동차 시장 점유율 1, 2위 기업은 일본계 마루티 스즈키사와 현대자동차이며, 마힌드라, 타타 등 인도계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10% 이하에 머물고 있다. 최근 기아 자동차는 신규 SUV 셀토스와 카니발을 출시해 SUV 시장 내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 차량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핸드폰과 가전제품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산 핸드폰이 시장점유율을 크게 늘리고 있다. 화웨이, OPPO에 시장 점유율 및 판매량의 1, 2위를 내주었으나, 이번 인-중 국경분쟁 및 중국산 제품 보이콧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한국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과 생활용품에서도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아, 지난 수십 년간 인도라면 시장의 스테디셀러인 Maggie 라면은 글로벌 식품기업 네슬레의 제품이며 더운 인도시장에서 소비자 선호가 높은 Limca 음료수 또한 코카콜라 인도법인의 현지 맞춤형 제품이다. 생활용품에서도 Colgate, 유니레버와 같은 사업자들이 각 제품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ITC, Himalaya, Patanjali와 같은 인도계 회사들이 매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의 지배적인 시장점유율을 넘어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 인도 최대의 소비시즌 디왈리

매해 10월 혹은 11월 기간이 인도 최대의 명절인 디왈리 축제가 열리는 기간이며 이 시기에 소비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인도 상공인 협회(CAIT)에 따르면 2016년 디왈리 기간 매출 규모는 37억 달러에 달하며, 2017년은 2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의류의 경우 매출의 52%가량이 디왈리 기간을 전후하여 판매된다고 할 정도로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이다.

이에 자동차, 전기·전자를 비롯한 제조업은 물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 또한 이 시기에 다양한 프로모션과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0년 디왈리 시즌을 맞아 조금씩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펌 McKinsey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조사 참여자 중 약 58%는 2~3개월 내, 약 90% 이상은 향후 1년 이내 인도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수개월 전보다 낙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McKinsey는 이러한 소비심리 회복으로 소비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단,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 사용제품 대비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으로 소비패턴이 변화되는 추세이다.

한국 상품 이미지

자동차,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한국계 기업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특히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경우 인도인들에게 인도산 브랜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현지 진출기업들이 'Make for India,' 'Make with India와 같이 현지에 녹아드는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도 소비자들이 해당 브랜드를 친근하게 여기는 성향도 나타난다. 인도법인은 4~6월 휴대폰 판매량 부문에서 시장 1위를 탈환했으며, 7~9월에는 스마트폰 분야까지 Xiaomi를 제치고 24%의 점유율로 시장 1위를 재탈환했다.

가전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아 자동차가 2019년 인도 시장에서 론칭 이후, SUV 판매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유통소비재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인식 수준은 낮은 편인데, 네슬레, 킨더조이, 코카콜라와 같은 서구 글로벌 브랜드에 비해 한국 유통소비재 기업의 인도진출 시기가 늦은 편이기 때문이다. 롯데제과와 오리온이 초코파이 제품을 인도에서 론칭하였으며,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한국산 라면, 김 등이 수입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산 화장품의 현지 매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미미하다. 다만, 한-인도 CEPA에 따라 화장품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기본관세율 0%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한류

마케팅을 활용하여 시장점유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가격시장 인도, 품질 대비 가성비를 강조할 필요

중국산 제품이 인도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데,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에 힘입어 인도 바이어에게 어필하는 경우가 많다. 인도는 대표적인 가격시장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도인들이 최고의 덕목으로 꼽는 것은 가성비이다. 따라서 제품이 다소 가격이 높아도 품질이 우수하면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직 시장이나 사업자의 자금력이 우수하지 않아 가격에 큰 민감성을 보인다.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조성하고 현지 산업계에서의 평판을 높여나가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억압된 인도의 소비심리가 인도 축제시즌(10~11월)을 맞이해 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6월에 발생한 인도-중국 국경문제로 인해 소비자 및 인도 정부는 중국 제품 사용을 기피하고있고, 관련해 대중 수입 및 투자 규제 시행도 고려 중이다. 중국 제품 사용 제한은 우리 기업제품이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인도에서는 여전히 제품 가격이 경쟁력의 주요 요인임을 인식해야 한다.

2) 계약서의 작성은 신중히

인도인과 계약서 작성 시 사소한 사항까지 모두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인도인이 협상 중 “No Problem”이라고 대답했을지라도 이는 단지 “당신 의중은 알겠다”는 식이지 동의가 아니므로, 계약에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도인에게 최종 의사결정이란 계약이 아닌 하나의 과정의 의미에 가까우며, 체결을 앞두고 갑자기 협의된 사항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들어오면 계약을 취소하려는 의사로 받아들이지 말고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

흔히 구사하는 전략으로 계약서에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들로 모두 채우고 선심 쓰듯 하나씩 양보해주는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나머지 조건들에 대해 느슨한 대응을 하도록 유도하여 불리한 계약에 이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계약서 초안을 한국 측에서 작성하여 인도 측이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지급조건과 판권 계약

인도 바이어와 거래 경험이 있는 업체들은 D/A, D/P 거래를 피할 것을 권하는데, 인도 바이어들이 상당 기간 정상 거래를 하다가도 외상 거래로 전환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계약상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측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중재국을 제3국으로 해두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인도 바이어가 독점 계약 기간을 수년간 정해두고 경쟁국 제품만 취급하며 한국기업이 다른 바이어에게 공급하려고 하면 위반 클레임을 거는 경우가 있다. 독점수입 계약 기간은 짧을수록 좋으며, 계약금을 받아두면 계약 이행 및 공급 계약 체결을 독촉하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결정권한이 있는 상대방과 협상해야 한다

인도 회사의 고용인들은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며 설령 보스의 지시가 잘못되었음을 아는 경우에도 모든 결정권과 책임이 보스에게 귀속되기에 반박을 잘 하지 않는다. 인도의 경직된 계급 사회적 특성을 감안할 때 일반 직원이 상위 레벨의 관계자를 대면하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기에 상위 직책을 가진 직원이 직접 미팅에 참석하여 결정권을 가진 사람과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인들은 협상이 생활의 일부로 뛰어난 언변과 능수능란한 협상력을 갖추고 있다. 인도 바이어는 가격 내리기와 조건 양보받기로 유명하며, 협상 과정에서 인내심과 침착함은 필수 요건이다. 공격적 협상 태도는 무례함으로 받아들이며 인도인들은 체면을 매우 중요시하기에 미팅 중 지적이나 비판에 신중해야 하고, 사전에 상세한 설명이 포함된 제안서를 보내면 담당자가 책임자에게 먼저 보고를 올려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인도인은 대부분 뛰어난 기억력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전개하며, 식사 자리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도 나중에 협상에 유리하게 이용하기도 한다. 관련 분야 지식도 상당한 수준이므로 계약 마지막 순간까지 사소한 이야기나 약속에 유의해야 한다. 미팅 후 협의 내용 요약서를 보내는 것도 좋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약속 잡기

인도인들은 시간을 지키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스스로는 잘 실천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 언제든지 약속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짤 필요가 있다. 인도 경영층은 보통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약속을 잡는 것을 선호하며, 인도 회사의 근무시간은 통상 9시 반~5시, 점심시간은 1~2시 사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미팅 시간을 잡는 것이 좋다.

인도를 방문할 시 몬순 기간에는 많은 비가 내려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위와 몬순을 피할 수 있는 10~3월 사이에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지역별로 서로 다른 공휴일들이 존재하고 해마다 날짜가 바뀌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스케줄 변경과 지연은 인도인과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며, 인도의 문화 특성상 가정에 중요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또한 비즈니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도 가정에서 아이들의 결혼, 관혼상제, 일가친척과 양친을 보살피는 것은 남성의 주된 의무이다.

2) 드레스 코드

남성은 정장을 갖추어야 하나 더운 날씨로 인해 양복 상의와 넥타이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IT 분야의 경우 구두 대신 스니커즈를 신는 등 캐주얼한 의상이 보편화하여 있다.

인도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으로 된 의상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외국여성이라 하더라도 짧은 치마나 반바지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여성은 보통 전통 의상이나 바지 정장(pantsuit)을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최근 도시 지역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3) 대화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는 것을 즐기며 비즈니스 미팅을 하면서도 가벼운 잡담으로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인들은 일반적으로 개방적이고 우호적이며 서구에 비해 사생활에 대한 관념이 낮은 편으로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가족 문화와 발달한 커뮤니티의 특성상 인도인에게 있어 가족과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심지어 가족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는 것을 우호의 표시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개인차가 있으며 처음 만난 사이거나, 적절하지 않은 자리에서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큰 결례가 될 수 있으니 항상 이러한 상황과 질문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고 될 수 있으면 먼저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인들은 직접 반대 표시를 잘 하지 않는데 드러내 놓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적대적인 태도로 인식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인이 대화 도중 양옆으로 고개를 흔들거나 8 자형으로 빠르게 고개를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는 부정의 표현이 아니라 “당신의 말을 이해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의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인도인은 귀납적 접근을 통한 인식 성향이 강하여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목적으로 주제와 맞지 않는 개인적, 사회적, 경험적 맥락에서 다방면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 혹 이러한 주제들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면 된다.

4) 화제

인도인들에게 있어 매우 인기 있는 세 가지 화제는 정치, 크리켓, 영화이며 정부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경제개발 관련 주제도 추가되었다. 동 주제들에 대해 미리 사전 준비를 하고 비즈니스에 임하면 관계 형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사람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데 열광하지만, 특정 지역에 한정된 정치 이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인도인들이 좋아하는 크리켓 게임의 경우 이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국가적인 오락으로 몇몇 세계적 크리켓 선수들은 스타 대접을 받고 있다.

외국인을 만나면 으레 인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던지는데 이는 부정적인 의사표시를 기대하고 던지는 것이 아니기에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5) 호칭

서구식으로 성이 이름 뒤에 명기되며 Mr. 또는 Ms.를 성 앞에 붙여 부르며 되나 이름 앞에 Dr.나 Professor가 명기되어 있으면 성 앞에 이러한 명칭을 붙이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직위나 나이가 높은 경우 Sir, Madam이라 부르는 것이 좋으며 정부 고위급 인사의 경우 존칭으로 성명 앞에 Shri(슈리), 성명 뒤에 Ji(지)를 붙인다.

한 사람의 지위는 나이, 학력, 직업 카스트에 따라 정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것은 민간 부문에 종사하는 것보다 훨씬 고상한 것으로 인식된다.

6) 선물

선물을 받자마자 열어 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전달 시 가장 높은 직책의 임원에게 두 손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고 선물 포장은 흰색, 검정색은 피하고 녹색, 빨간색, 노란색을 쓰는 것이 좋다.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콜릿, 꽃 등의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수입 위스키가 아주 좋은 선물이 된다.

7) 인사

코로나19 이전 비즈니스 에티켓은 상대와 만남을 가지는 자리에서는 직위가 낮은 사람 혹은 예의를 표하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손을 건네 악수를 청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대부분 비즈니스 미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때 첫 만남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후 고개를 약 30도 정도 숙이며 '나마스떼'라는 말과 함께 만남 인사를 건네는 것이 예의로 자리 잡았다.

혹 대면 만남을 갖게 되더라도 '나마스떼'라는 말과 함께 인사를 건네거나, 접촉이 적은 팔꿈치를 살짝 부딪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한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S사

-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상담 및 법인설립 지원 ('18. 2~4.)

S사 안과장 외 2명이 뉴델리 무역관을 방문하여 현지시장 진출 지원에 대해 상담했다. 이에 인도 시장, 경제에 관한 정보와 법인설립 정보를 안내하고, 인도 투자법률과 제도를 안내하였다. 이를 통해 인도 법인을 2018년 6월 설립하였다.

- 투자진출을 위한 사무실 및 공장부지 수배 지원 ('18. 5~10.)

S사의 요청으로 인도 뉴델리수도 광역권(National Capital Region) 지역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였다. 인도 발령 예정이었던 안 법인장과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가 무역관에 방문하였고, 사무실 임대 및 공장부지 관련 미팅진행 및 현장 방문 지원하였다. 또한, 인도 컨설팅회사와 상담을 주선하고 법인 설립 진행 내역도 확인하였다.

- 현지 온라인 마케팅 유통망 진출지원 ('19. 2~5.)

주력 생산품인 핸드폰 케이스의 경우 온라인유통망을 중심으로 유통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인도 현지 온라인 유통망 진출을 추진하였다. 아마존, 플립카트 등 대표적인 인도 내 이커머스 회사들과 계약을 진행하였고 뉴델리무역관 자문 변호사를 동행하여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였다. 특히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마존 인디아 최고운영자와 미팅을 주선하는 등, 온라인 유통망 시장개척을 적극 지원하였다.

- 채용 및 현지 노무관리 매뉴얼 작성 지원 후 공장 준공 ('19. 5~7.)

사무실 및 제조공장의 인도인 채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동법 자문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법인장 및 무역관 자문변호사, 실무진 등을 대동하여 수차례 실무미팅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채용과 노무 관련 HR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법인설립과 공장 설립을 순조롭게 진행하였고, 2019년 7월 공장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인도 현지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이다. 법인설립 관련 단순 정보제공을 넘어서 계약 자문, 공장부지 물색, 온라인 유통망 진출 등을 아우르는 전천후 진출지원을 통해 성공 사례를 창출하였다. 또한, 채용 및 노무 매뉴얼 작성을 지원하는 등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KOTRA 뉴델리 무역관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기업으로써 목표한 매출액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2) H사

H사는 1997년 인도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였다. 당시 인도 법률상 외국기업의 단독투자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4억 달러의 대규모 초기투자자와 부품 조달의 현지화를 약속 등으로 투자를 감행하였다. 이에 첸나이 인근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며 진출 2년 만에 소형차 시장 점유율 1위 차지하고 이후 공장 증설 및 제2공장 건설로 생산 능력은 60만대로 확장하였다.

- 진출 성공 과정

- 2006년 3월 진출 8년 만에 100만 번째 차량 생산에 성공
- 2012년 39만대 판매 14.9% 점유율
- 2015년 50만대 판매 17.3% 점유율
- 2015년 그랜드 i10과 그랜드 i20을 10만 대 이상 판매하며 '10만대 클럽'에 가입
- 2017년 52만대 판매 16.4% 점유율
- 인도 자동차 시장 2위

3) B사

B사는 2014년 7월 창업하여 인도시장에 진출하였다. 이 대표는 ○○○모바일 회사에서 통신사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신환경이나 통신 사용자들의 패턴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인도에는 선불제 요금 사용자가 거의 95%인 것에서 가능성을 보고 '○○○'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인도에 진출하였다. 출시 3년 만에 5,000만이 넘는 다운로드수를 기록하고 또한 2017년에는 인도 선지급결제 PPI 라이선스(은행과 준하는 정식 금융사업을 할 수 있는 인증)를 국내 최초로 획득하는 등 소액대출, 공과금 납부 등 모바일 파이낸스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19년 다운로드수 7,000만 돌파하였다. 성공 요인으로 인도 도시지역에서부터 시골지역까지 ○○○앱을 알 수 있도록 접근하였다. 또한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1:1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고, 현지에 로컬 판매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어 마케팅을 펼치는 영업 전략을 사용하였다. 특히, 주변의 지인을 초대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무료 통화와 보상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다. 추가로 영문뿐만 아니라, 힌디어, 타밀어, 펀자브어 등 인도의 다수의 언어로 번역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S사

S사는 2007년 뉴델리에 처음 진출했으며, 2012년부터 뉴델리에 무역법인을 운영해왔다. 2016년부터는 푸네 지역에 초고압 차단기 생산공장을 설립하면서 사업을 확대했으며, 현재는 연 3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 중이다. 또한, S사는 2018년 2월 18일에 인도 뭄바이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2019년까지 마하라슈트라주에 스판덱스 공장을 건립하기로 합의하였고,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산업도시인 아우랑가바드시 인근의 아우릭 공단에 약 12만 평(40ha) 규모의 부지를 마련하고, 2019년에 공장 건립을 완료하였다. S사는 스판덱스 공장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2020년에는 고부가가치의 프리미엄 시장 확대에 집중할 예정이고, 시장점유율을 70%까지 늘리는 등 고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지배자적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5) D사

단독 투자로 인도에 진출한 D사의 인도법인은 2011년에 인도 보일러 제조업체인 A사를 인수하면서 2012년 인도 국영 에너지회사인 N사로부터 13억 불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D사는 인도 L 화력발전소(2010년), M 화력발전소(2008년), S 화력발전소(2004년)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인도 내 발전소, 담수화 플랜트 등 건설분야 및 장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 기존 코로나19로 일부 비자에 대해 신청이 정지되었으나, 인도정부는 2020년 10월 23일 E-Visa, 관광비자, 의료목적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에 효력정지를 해제함.

- 입국 가능 대상
 - 외교관용비자, UN 등 국제기구, 고용프로젝트 비자, 비즈니스 비자(스포츠용 B-3 제외) 소지자
 - 외국 의료전문가, 보건연구원, 엔지니어 및 기술자(인도에 있는 공인 및 등록된 의료 시설, 제약 회사, 대학의 초청장 필요)
 - 외국인 기업체의 엔지니어링관리설계 담당 또는 기타 전문가(금융, 제조, 설계, 소프트웨어 및 IT 분야 포함)
 - 인도 기업체 초청의 기계 및 장비 시설의 설치수리유지보수 기술 전문가 및 엔지니어(장비 설치, 보증 기간 내 또는 판매 후 서비스 또는 수리가 이에 해당)
 - 고용비자 소지자의 가족, 인도인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인도인인 자녀 등
 - 대사관,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동반가족
 - 인접국가에서 본국 또는 다른 국가로 환승하려는 외국인
 - 치료 목적의 의료관광(간병인 1명 포함)

○ 신청방법:

인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비자가 필요하다. 비자 신청인은 승인받은 비자의 방문 목적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비자 목적 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법적 조치나 강제 추방을 당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는 양국 협정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외교관 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비자 신청 시, 공통으로 비자 신청서, 인도 비자용 사진 2장, 여권, 여권 사본 1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사본 1장, , 무통장 입금증 혹은 온라인 이체 확인증, 인도비자 접수센터 예약완료 확인증을 준비해야 한다. 이외 기타 필요 서류들과 개정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도비자접수센터: <https://www.vfsglobal.com/india/southkorea/>
- Bureau of Immigration: <https://boi.gov.in/>
-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in-ko/index.do>

1) 관광비자

- 신청자격: 관광비자는 인도 방문의 주목적이 여가, 관광, 친구와 가족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어야 한다. 관광비자는 비즈니스회의를 비롯한 기타 활동이 허용되지 않으며 비즈니스 회의 목적으로 인도에 입국할 경우, 상용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 체류기간: 일반적으로 한번 입국 시, 9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지 연장 및 타입 변경이 불가능하며 비자 유효기간은 주한 인도대사관으로부터 비자가 발급되는 날부터 시작된다.
- 제출서류: 공통적인 필요서류뿐만 아니라 인도방문 여행 일정표(방문 국가/날짜 등을 모두 포함하여 영문으로 작성, VFS 인도비자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가능)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급절차
 - 인도비자접수센터에서 본인의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 명시된 필요서류 준비
 - INDIAN VISA ONLINE(<https://indianvisaonline.gov.in/visa/index.html>)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신청서(Regular Visa Application) 작성
 - 인도비자접수센터에서 온라인신청서 작성 대행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 비자 발급을 위한 수수료 확인 후 온라인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결제
- 인도비자접수센터 온라인예약(<https://www.vfsvisaservice.com/IHC-SouthKorea-Appointment/AppScheduling/AppWelcome.aspx?P=cCiy6xeqlBWf0MSvIUERSDLPTGMQfaKiXNB3g21Kz0Q%3d>)사이트에 접속하여 방문날짜와 시간예약
- 수수료 결제 후 이체 확인증과 신청서/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비자접수센터 방문

2) 상용비자

○ 신청자격: 회사의 미팅 및 단기간 기계설치, 마케팅 분석을 위하여 방문하는 신청인에게 해당된다. 인도에 회사를 설립한 사업주 신청인은 상용비자(사업주용)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체류기간: 일반 상용비자는 출장 명령서나 초청장 안에 한번 입국의 체류기간이 180일을 넘길 수 없다.

사업주용 상용비자는 도착 후 14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 후 장기체류가 가능하다.

○ 제출서류

- 일반, 사업자용 공통필요서류
- 인도 회사의 초청장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한국 회사에서 발행된 영문 출장증명서 원본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
- 1년 이상의 상용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서류(한국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내역서, 인도 회사의 세금 내역서)와 함께 인터뷰 필요

- 사업주 상용비자를 신청할 경우, 인도회사 사업자등록증, 인도 회사정관, PAN카드 사본, 임대 계약서, 최근 2년간 회사 세금 내역서, Turnover Certificate, 최근 6개월간의 회사통장(인도은행) 거래 내역서, 회사프로필을 증빙 서류로 추가 제출

○ 발급절차

- 관광비자 발급절차와 동일 / 사업주의 경우 인터뷰가 필요하므로 오전 9~10시 사이 비자센터 방문 필요

3) 도착비자

인도 정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인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 대하여 도착비자(Visa On-Arrival)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착 비자발급을 위해 2,000루피 또는 2,000루피 상당 외화(신용카드 가능)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뭄바이 공항은 카드결제 불가능)

도착비자는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신청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부계 또는 모계)가 파키스탄에서 태어났거나 파키스탄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도착비자는 연장 또는 다른 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 신청자격

- 관광, 상용, 회의, 진료 목적으로 최대 60일 이내 체류 예정으로 인도를 방문하는 자
- 인도에 거주하지 않고 인도에 직장이 없는 자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자
- 충분한 여행경비 소지자(왕복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포함)
- 인도 정부의 기피대상 인물(입국금지자 등)이 아닌 자
- 인도 입국에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자

○ 체류기간

- 입국일로부터 최대 6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60일 이내에 1회 더 출입국 할 수 있습니다(더블엔트리 비자). 그러나 체류기간이 총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 도착비자 부여 공항

- 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6개에 한하며 출국은 제한 없음)

○ 발급절차

- 신청인은 도착비자신청서(VOA Application form) 및 입국카드(Disembarkation Card) 작성
- 신청인은 비자 접수창구(Visa Counter)에 여권 및 도착비자 신청서를 제출
- 이민국 직원은 도착비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에 'Scrutinized' 도장을 날인하고,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안내
- 신청인은 수수료를 납부한 후 비자 접수창구에서 지문과 안면 촬영을 하고, 수수료 지불 사실을 확인받음
- 이민국 직원은 여권에 도착비자와 입국심사인을 날인하고 입국카드 수고
- 여권에 도착비자(타원형 도장)와 입국심사인이 날이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

4) E-VISA

E-Visa에는 전자 관광 비자 (30일/ 1년/ 5년), 전자 비즈니스 비자, 전자 회의 비자, 전자 의료 보조 비자 및 전자 의료 비자.와 같이 5개의 범주가 있다.

전자 관광 비자는 30일 25달러, 1년 40달러, 5년 80달러이고 2.5%의 결제 수수료가 부과된다. 인도 입국 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반드시 4일 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 체류기간 : 일반적으로 한번 입국 시, 관광 비자 최대 90일, 비즈니스 비자 최대 180일(180일 이상 머물 경우 FRRO 2주내 등록), 회의 비자 최대 30일, 의료 보조 및 의료 비자 최대 6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지 연장 및 타입 변경이 불가능하며 비자 유효기간은 신청 사이트에서 비자가 발급되는 날부터 시작된다.

○ 발급절차 : <https://indianvisaonline.gov.in/evisa/tvoa.html> 온라인 신청

5) 비자의 연장

인도에서 체류 중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무소(FRRO)에 신청하면 된다. 비자를 연장할 경우 단기 비자는 180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추가 비용은 필요 없고 여권과 사진이 필요하다. 연장 기간이 180일 이상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관광비자 및 도착비자는 연장 또는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

관련된 서류를 모두 구비한 경우에도 FRRO에서 특정한 기준 없이 서류미비를 빌미로 발급하여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비자연장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휴대품 면세 한도

○ 휴대물품의 정의

-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이 상업용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여행자가 개인용 또는 선물용으로 휴대하는 신품 또는 중고 물품이다. 직업용품은 장치 또는 설치가 필요한 기계류를 제외되며 통상적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 휴대물품의 면세 한도
 - 네팔, 부탄 및 미얀마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귀국하는 인도 내국인 또는 인도 거주 외국인(거주증 소유)일 경우, 아래 공통 면세물품 제외 최대 50,000루피 면세
 - 인도 출국 3일 이내 출국 시 10살 이상의 여행객은 최대 12,000루피, 10살 미만의 여행객은 최대 3,000루피 상당의 물품 면세
 - 인도 출국 3일 이후 재입국 여행객에 대해서는 10살 이상의 여행객은 최대 25,000루피, 10살 미만의 여행객은 최대 6,000루피 상당의 물품 면세
 - 2세 이하의 유아의 경우, 개인 사용물품 이외 면세한도 없음

- 공통 면세 물품
 - 개인사용 물품 및 기념품은 면세된다.
 - 2L를 초과하지 않는 주류는 면세된다.
 - 담배 100개비, 시가 25개비 또는 담뱃잎 125 gm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면세된다.
 - 18세 이상의 여행객의 노트북 1개까지는 면세된다.

- 휴대물품의 관세 징수
 - 초과된 면세한도 물품에는 기본관세 38.5% 부과된다.
 - 초과된 위스키에는 기본관세 150% + 추가관세 4%가 부과된다.
 - 초과된 맥주에는 기본관세 100% + 교육세 3%가 부과된다.
 - 초과된 담배에는 기본관세 100% + 교육세 3%가 부과된다.

2) 외화 반·출입 한도 및 신고필요 반입물품

외국인의 경우 개인사용 보석류를 제외한 모든 보석류는 신고대상이며, 5,000달러 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고 인도 출입국시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5,000달러 미만 휴대 시 신고 불필요).

- 5,000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소지하고 인도를 출입국 할 시에는 해당 세관에 신고해야한다.
- 10,000달러 이상의 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과 함께 인도를 출입국 할 시에는 해당 세관에 신고해야한다.
- 보석류의 경우 인도인에 한해 남성의 경우 25gm 또는 50,000루피 가치까지, 여성의 경우 40gm 또는 100,000루피까지 면세되나 외국인의 경우 개인 사용 보석류를 제외한 보석류는 신고대상이다.
- 동식물 및 그 추출 및 가공품은 모두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무기 · 탄약 · 폭발물, 방사능 관련 물질, 영화필름 등은 각각의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관기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인도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91-11-42007000
주소	9, Chandragupta Marg, Chanakyapuri Ext. New Delhi- 110021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in-ko/index.do

○ 인도 한인회

전화번호	+91-11-6514443
주소	Plot No. 90, Urban Estate, Sector-28, Gurgaon-122001, Haryana
홈페이지	http://indo.korean.net/

○ 한국문화원

전화번호	91-11-4334-5000
주소	25-A, Ring Rd, Vikram Vihar, Lajpat Nagar IV, Lajpat Nagar, New Delhi,
홈페이지	http://india.korean-culture.org/ko

<자료원 : 동 사이트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연방정부 사무소

전화번호	011 2806 3869
주소	90 Killa, Rejang La Marg, Bijwasan, New Delhi, Delhi 110061
홈페이지	https://www.india.gov.in/

○ 인도 상공회의소(FICCI)

전화번호	011 2373 8760
주소	1 Federation House, Tansen Marg, Todermal Road Area, Mandi House, New Delhi, Delhi 110001
홈페이지	http://www.ficci.com

○ 인도 연합 상공회의소 (ASSOCHAM)

전화번호	011 4655 0555
주소	5, Sardar Patel Marg, Chanakyapuri, New Delhi, Delhi 110021
홈페이지	http://www.assochem.org

○ 인도 자동차부품 제조협회 (ACMA)

전화번호	+91-11-26160315
주소	Capital Court, Block BH, Munirka, New Delhi, Delhi 110067
홈페이지	http://www.acma.in

○ 인도전자부품 산업협회 (ELCINA)

전화번호	011 4161 5985
주소	Elcina House, 422, Okhla Industrial Estate, Phase-III, New Delhi, Delhi 110020
홈페이지	http://www.elcina.com

○ 인도 수출협회 (FIEO)

전화번호	1800 121 9000
주소	Rao Tularam Marg, Subroto Park, Shankar Vihar, New Delhi, Delhi 110057
홈페이지	https://www.fieo.org/

○ 인도 산업연합 (CII)

전화번호	0124 401 4060
주소	Plot No, 249F, Phase IV, Udyog Vihar, Sector 18, Gurugram, Haryana 122015
홈페이지	https://www.cii.in/

○ 인도 무역진흥기구 (ITPO)

전화번호	011 2337 1540
주소	Mathura Road Near, Railway Colony, Pragati Maidan, New Delhi, Delhi 110002
홈페이지	http://www.indiatradefair.com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

전화번호	1800 11 2100
주소	FDA Bhawan, Kotla Marg, near Bal Bhavan, Mandi House, New Delhi, Delhi 110002
홈페이지	https://www.fssai.gov.in/

<자료원 : 동 사이트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73.86 루피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맥치킨버거)	단품	2.5
2	식품	비빔밥	1인분	9.5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9.5
4	식품	신라면	1봉지	1.4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3.5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0.14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0.4
8	의료	항생제	12정	0.68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3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0.3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0.8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8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1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06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4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3.5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12
18	임금	대출-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월	406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평균 수업료	연간	55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7

<자료원 : KOTRA 뉴델리 무역관>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인도의 화폐단위는 루피(Rupee)와 소수점 아래 단위인 파이사(Paise)를 사용하며, 파이사의 경우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루피화는 화폐 수량 단위로는 'Rs'로 표기되며 국제환표기시에는 INR로 표현된다. 지폐로 2,000, 500, 200, 100, 50, 20, 10루피가 있으며, 주화로 10루피, 5루피, 2루피, 1루피가 있다. 1루피는 한화로 대략 15원가량의 가치를 지닌다. 현지에서 루피화 이외의 통화 거래는 엄격히 금지되며 달러의 경우 해외여행이 아닌 한 현금인출이 통제되어 있다.

환전방법

환전은 공항, 호텔, 은행 등의 공식적인 환전소에서 수시로 가능하나 스프레드가 커서 현지에서 루피화 현금을 찾으면 가치를 박하게 주는 편이다. 따라서 루피화 현금의 경우 한국의 외국환 거래 은행에서 미리 바꾸어 오는 것이 좋다. 파하르간즈와 같은 여행자 거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공식 환전소의 경우 이러한 공식 환전소에 비해 스프레드 차이가 작아 환전에 유리한 경우가 있다.

인도에서는 위조화폐가 유통되기도 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환전소에서 환전할 경우, 2,000루피와 같은 고액 화폐는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인도 경제 수준에 비해 지폐의 가치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2,000, 500루피보다는 200, 100, 50루피와 같은 잔돈을 넉넉히 구비하고 다녀야 거래 시 거스름돈을 제대로 돌려받거나 지불할 수가 있다.

신용카드 이용

현지인들에게는 아직까지 신용카드나 데빗카드의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나, 인도정부의 노력으로 도시지역의 쇼핑몰이나 소형 숍에서는 대부분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뉴델리, 첸나이 등 대도시를 벗어나거나 시골 지역의 경우 카드 결제가 거의 되지 않는다. 비자, 마스터카드 등 대부분 국제카드사의 결제 망을 사용하는 카드는 현지에서 결제가 대부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나. 교통

교통상황

인도의 도로망은 아직 열악한 편이며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도로가 몸살을 앓는다. 아침 출근 시간인 8시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도로가 심각하게 정체가 되며 퇴근길 정체 시간은 5시부터 시작이 된다. 순환도로나 우회로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의 경우 예정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가량 미리 출발하는 것이 좋다.

인도는 한국과 운전면허와 관련된 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자가운전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자동차의 핸들이 오른쪽에 위치해있고, 인도의 도로 정체가 심하고 외국인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주재원들은 택시를 사용하거나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버스

시내, 시외, 장거리 버스 등 다양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 요금이 저렴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와 언어소통 등 애로사항으로 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특히, 여성에 대한 버스 내 강력범죄 사례가 잇따라 보고됨에 따라 버스 사용을 권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여행 시 장거리 버스는 이용 편의성과 저렴한 가격으로 자주 사용되는 교통수단이다. 대표적인 관광루트인 뉴델리-자이푸르 여행 시, 슬리핑버스를 이용하면 약 8시간 거리를 누워 쉬면서 갈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비용은 한화 약 12,000원 정도)

택시

택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정식 택시와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공유차량 사업자의 택시, 개인 운영 택시로 나뉘어진다. 인도에는 Meru, Radio Taxi와 같은 운송사업자와 개인 택시가 한때 시장을 지배하였으나, 2015년 4G 통신망 서비스 도입 이래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공유차량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G 통신망 정착 이후, 한국의 카카오 택시와 유사한 차량 호출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우버(Uber) 및 올라(Ola)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전사와의 별도 네고 절차 없이 경로, 거리를 기반으로 요금이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기당할 위험이 적어지고, 외국인으로서도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해당 서비스는 해외결제카드와 전화번호 등록만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교통상황에 따라 다르나 대략 10~15KM당 100루피 정도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길거리에서 잡을 수 있는 릭샤와 달리, 우버 및 올라는 운전사가 회사에 등록되어 있고, 회사 차원으로 운영을 하므로 안전성 측면에서 선호되어 현지 여성들의 경우 운송사업자 택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릭샤

세발 오토바이인 릭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택시로 가기 어려운 짧은 거리나 골목길을 지나칠 경우 이 간이 택시를 사용하게 된다. 릭샤는 대개 길거리에서 직접 차량을 잡아 이용하게 되며, 최근에는 Uber와 Ola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릭샤를 예약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가격 면에서 택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네고를 통해 가격을 올리려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다. 통신

핸드폰

2015년 4G 통신망 서비스가 도입된 이래 통신망의 확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인도 내에서 무선통신과 데이터 서비스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 인도에는 Airtel, Vodaphone, Reliance Jio와 같은 통신망 사업자가 있으며, Airtel이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통신망 사업자마다 지역별 기지국 인프라 설치 현황, 가격이 다양하므로, 일정 지역의 경우 특정 통신망 사업자의 서비스가 이용에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단기 체류 여행객의 경우, 공항이나 대형 쇼핑몰에 위치한 통신사 매대에서 USIM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여권과 핸드폰을 제시하면 단기 체류용 USIM을 설치해준다. 거주자의 경우, 핸드폰 이용을 위해서는 각 통신사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Prepaid의 경우 여권, 비자 사본, 증명사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개통 신청을 하면 약 48시간 이내에 개통된다. PostPaid의 경우, 상기 서류 외에도 거주 증명서와 같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인터넷(와이파이)

유선 인터넷의 경우 지역의 유선 인터넷 및 케이블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용할 수가 있다. 지역마다 사업자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은 물론, 거주 건물에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및 케이블망 사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개 케이블 사업자가 인터넷 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케이블과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 대개 한국과 같이 기간 약정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한다. 인터넷의 경우 전송속도와 제한용량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대개 월 500-

2,000루피가량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공공장소에서의 Wifi는 공항을 제외하면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호텔이나 커피숍 등에서는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투숙객이나 이용객에 한정된다. 도시 지역을 벗어난 소도시 지역의 경우 와이파이 자체가 없거나, 무선 인터넷 또한 느린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

라. 관광명소

○ 붉은요새(Red Port)

도시명	뉴델리
주소	Netaji Subhash Marg, Lal Qila, Chandni Chowk, New Delhi, Delhi 110006
운영시간	화~일: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
휴무일	월요일 및 공휴일
명소소개	무갈왕조 제5대 황제 샤자한이 건설(1639~1748년)한 성으로 올드델리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붉은 빛의 사암으로 지어져 '붉은 성'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비고	전화: +91 011-2327-7705 홈페이지: https://delhitourism.travel/red-fort-lal-kila-delhi

○ 인디아 게이트(India Gate)

도시명	뉴델리
주소	Rajpath, India Gate, New Delhi, Delhi 110001
운영시간	종일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여 전사한 9만 명의 인도 병사를 위한 높이 42m의 위령비이다.
비고	홈페이지: http://www.delhitourism.gov.in/delhitourism/tourist_place/india_gate.jsp

○ 쿠투브 미나르(Qutab Minar)

도시명	뉴델리
주소	Mehrauli, New Delhi, Delhi 110030
운영시간	월~일: 오전 7시~오후 5시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이슬람 세력이 인도를 정복한 기념으로 세운 높이 73m의 탑(1215년)이다.
비고	홈페이지: http://www.delhitourism.gov.in/delhitourism/tourist_place/qutab_minar.jsp

○ 라즈가트(Raj Ghat)

도시명	뉴델리
주소	Behind Red Fort, New Delhi, Delhi 110006
운영시간	월~일: 오전 6시30분~오후 6시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마하트마 간디 묘소(1948년 1월 유해를 화장했던 장소)로 근처에 간디 기념관이 있다.
비고	홈페이지: http://www.delhitourism.gov.in/delhitourism/tourist_place/memorial_delhi.jsp

○ 타지마할(Taj Mahal)

도시명	아그라
주소	Dharmapuri, Forest Colony, Tajganj, Agra, UP 282001
운영시간	월~일(금요일 제외): 일출 전 30분~일몰 전 30분
휴무일	금요일
명소소개	아그라(델리에서 남동쪽으로 약220Km)에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꼽히는 건축물로, 무갈 제국의 제5대 황제 샤 자한이 죽은 왕비를 위해 지은 무덤이다. (1631년 건축 시작, 1653년 완성)
비고	전화: +91 562-2227261 홈페이지: https://www.tajmahal.gov.in/

<자료원 : 해당 홈페이지>

마. 식당

- 현지식당

○ 사이드웍(Side Wok)

도시명	Gurgaon
전화번호	+91 124 438 6144
주소	Ground Floor, MPD Tower, DLF Phase V, DLF Golf Course Road, Sector 54, Gurugram, Haryana 122002
가격	USD 10
영업시간	오후 12시~오후 10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아시안 푸드 전문점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 아시안 푸드(타이, 중식 등) 전문점으로 고급 분위기의 실내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 가능
----	---

○ 파이렛츠 오브 그릴(Pirates of Grill)

도시명	구르가온
전화번호	+91 124 401 3333
주소	Shop No. 7 - 10, Ground Floor, MGF Megacity Mall, Near Sikanderpur Metro, Station, Mehrauli-Gurgaon Rd, A Block, DLF, Sector 28, Gurugram, Haryana 122002
가격	USD 15
영업시간	오후 12시~오후 10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바베큐 전문 음식점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 바베큐 전문 음식점으로 치킨, 새우, 탄두리 등 그릴 음식들이 있으며 채식주의자 음식도 같이 있음. 뷔페식으로 다양한 음식들이 있음

○ 난킹(Nan King)

도시명	뉴델리
전화번호	+91 11 2613 8936
주소	Delhi Public School, Sector- C, Vasant Kunj, New Delhi, Delhi 110070
가격	USD 10
영업시간	오후 12시~오후 3시, 오후 6시~ 오후 11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중국 해산물 요리 전문점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 중식 전문점이며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

○ 라지즈 어페어(Lazeez Affair)

도시명	뉴델리
전화번호	+91 98993 30055
주소	Chanakyapuri Shopping Complex, 48, Malcha Marg, New Delhi, Delhi 110021
가격	USD 20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11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인도 전통 음식점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 인도 전통 요리 전문점이며, 식당 내부가 깔끔하며 탄두리 및 커리 음식 등 다양한 인도 요리를 맛볼 수 있음

○ 굴라티(Gulati)

도시명	뉴델리
전화번호	+91 011 2338 8836
주소	6, Pandara Road Market,
가격	USD 15
영업시간	오후 12시~오전 12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인도 전통 음식점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 인도 전통 음식 전문점이며, 인도 현지인들 사이에 인기가 많으며 가격도 음식 대비 저렴한 편임, 식당 내부 인테리어도 세련됨.

<자료원 : Google>

- 한국식당

○ 명가 더비빔밥(MyoungGa The Bibimbab)

도시명	구르가온
전화번호	+91 9650275322
주소	202A, South Point Mall, Golf Course Road, Sector 53, Gurugram, Haryana 122002
가격	USD 8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9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회사 미팅하기에 적합하며, 가족과도 식사하기 좋은 식당, 각종 찌개, 탕 고기류 등 한식 전문

○ 미소()

도시명	구르가온
전화번호	+91 99102 99367
주소	Unit 11, Ground Floor, Global Foyer Building, Golf Course Road, Sector 43, Gurugram, Haryana 122002

가격	USD 8
영업시간	오후 12시~오후 9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하기 좋은 곳이며, 해물탕, 감자탕 등 다양한 한국 요리를 즐길 수 있음.

○ 하루()

도시명	구르가온
전화번호	+91 98108 04367
주소	Shop No 1, Sector 53, South Point Mall , LG, Gurugram, Haryana 122022
가격	USD 8
영업시간	오후 12시~오후 9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한국식 중화요리 전문점이며 식당이 위치한 건물에 한국 빵집 및 한인마트가 있어 식사 후 디저트 및 간단한 한국 음식 재료들을 살 수 있음.

○ 궁()

도시명	델리
전화번호	+91 11 4608 2663
주소	D-1/B Near Aashirwad Complex, Green Park, New Delhi, Delhi 110016
가격	USD 10
영업시간	오후 12시~오후 9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델리에 위치한 한식당으로, 만찬이나 여러사람이 함께 식사하기 좋은 식당, 갈비, 등심, 한식 전문

○ 서울식당()

도시명	델리
전화번호	+91 11 4100 3848
주소	Ansal Plaza, August Kranti Marg, Hudco Place, Andrews Ganj Extension, Andrews Ganj, New Delhi, Delhi 110049
가격	USD 6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9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델리에 위치한 식당이며, 각종 찌개류 등 다양한 한식이 있으며 편안한 자리에서 식사하기 좋은 식당
----	--

<자료원 : Google>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o 더 릴라(The leela)

도시명	구르가온
주소	Africa Ave, Diplomatic Enclave, Chanakyapuri, New Delhi, Delhi 110023
전화번호	+91 11-3933-1234/
홈페이지	https://www.theleela.com
숙박료	USD 70~80(스탠다드 룸)
소개	5성급 호텔로 국제 중요 행사 및 포럼 등 주최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인도로 출장올때 많이 이용하는 호텔임. 구르가온과 뉴델리 경계 부근에 위치함.

o 오베로이 호텔(The Oberoi)

도시명	뉴델리
주소	Dr. Zakir Hussain Marg New Delhi - 110003.
전화번호	+91 11-2436-3030/
홈페이지	https://www.oberoihotels.com/
숙박료	USD 190~210(스탠다드 룸)
소개	5성급 최고급 호텔로 해외 주요 인사들이나 VIP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호텔임. 비즈니스맨들에게도 적합한 호텔로, 내부시설도 깨끗하고 위치도 뉴델리 시내 중심지에 위치함.

o 르메르디안 호텔(Le Meridien)

도시명	뉴델리
주소	Windsor Place, Janpath, New Delhi - 110001.
전화번호	+91 11-2371-0101/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delmd-le-meridien-new-delhi/
숙박료	USD 45~50(스탠다드 룸)
소개	5성급 호텔로 뉴델리 출장 시 이용하기에 적합하며 뉴델리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미팅 방문이나 호텔로 찾아오기도 적합하여 비즈니스 미팅을 하기에 편리함.

- 게스트하우스

o 신라 게스트하우스(Silla Guest House)

도시명	구르가온
주소	The Belaire DLF Phase5 Gurgaon Haryana, Gurgaon
전화번호	+91 9899235829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silla2006
숙박료	USD 100~110(일반룸)
소개	뉴델리 국제 공항에서 차로 25분 소요 신도시 구르가온 내 최고급 아파트에 위치, 한식 제공 및 다양한 출장 서비스 제공
비고	이메일: silla2006@gmail.com

o 구하우스 (Koo House)

도시명	노이다
주소	Plot7 Chi3- Casia Nodosa Estate, Great Noida
전화번호	+91 9811649124
숙박료	USD 100~110(일반룸)
소개	뉴델리 국제 공항에서 약 50km 떨어진 신도시 그레이터 노이다 중심부 위치, 한식 제공 및 다양한 출장 서비스 제공
비고	이메일: kss8032@hanmail.net

o 드림하우스(Dream Guest House)

도시명	뉴델리
주소	A-132, First Floor, Neeti Bagh, New Delhi
전화번호	+91 9810097323
숙박료	USD 120~140(일반룸)
소개	뉴델리 국제 공항에서 차로 40분 소요 뉴델리 중심부 위치, 한식 제공 및 다양한 출장서비스 제공
비고	이메일: dreamindia@hotmail.com

<자료원 : 동 사이트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치안상황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인도의 치안은 상당히 안정된 편이며,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인구당 범죄율 또한 낮은 편이다. 다만, 인도가 워낙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20년 하반기 기준, 외교부는 인도 북부의 카슈미르 지역과 카르길 지역을 여행 경보 3단계 철수권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부 카르길 지역은 험준한 산악지역 특성과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중국 국경분쟁 발생 지역으로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철수권고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하기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외국인 대상 범죄유형이다.

○ 강도, 절도, 소매치기

- 외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강도 및 절도이며, 그 수법은 현지인이 친밀감을 나타내며 접근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정도 친해지면 수면제 등 약물을 탄 음식물을 호의로 건네주어 먹게 하고 잠든 사이 소지품을 강탈하는 사건이 게스트하우스, 기차 등에서 가끔 발생한다. 또한, 관광명소, 지하철역, 기념품점, 시장 등 혼잡장소에서 호객을 하거나 관광안내를 한다며 접근하여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지갑, 카메라, 휴대전화 등 고가품을 소매치기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한다. 그러므로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물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며 혼잡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관심을 보이지 말고, 귀중품은 복대를 이용하여 항상 몸에 소지하는 등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 기차역 등 다중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날치기 사례가 빈발하므로 외출 시 고가품, 귀금속류 등을 휴대치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권, 현금 등이 든 가방을 허술하게 메거나 차량 탑승 시 차창을 내린 채 소지품이 바깥에서 관찰되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삼가야 한다.

○ 성범죄

- 인도는 보수적인 사회로 아직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으며 인도 남성들의 외국 여성에 대한 호기심이 종종 성추행 심지어 성폭행 등의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2012년 12월 발생한 버스 안 여대생 집단성폭행치사 사건은 인도 전역에 엄청난 충격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외에도 스위스 주부 집단 성폭행, 미국인 여성 집단 성폭행 사건 등 외국인 여성상대 집단 성폭행 사건도 수시로 발생하여 뉴스 이슈화된 바 있다.

- 따라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의 경우 가급적 혼자 여행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혼자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야간에 기차,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사람을 미리 확인하고 출입구의 시정을 확실히 하며, 오토릭샤, 택시를 이용 시에는 되도록 대로(大路),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을 이용하여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기사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승차하지 말아야 한다. 관광지, 기차역 등에서 목적이 같은 방향이라며 호의로 오토바이를 태워준다고 제안하는 경우 및 인도남자의 이유 없는 접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며, 계속하여 추근대는 경우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주변에 알려야 한다.

○ 호객 및 폭리행위(여행사기)

-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오토릭샤, 택시기사 등이 여행사, 호텔 등과 결탁하여 공항, 기차역에 도착하는 여행객들이 '특정 호텔로 가자'고 하면 '축제나 테러로 그 지역이 폐쇄되었다. 호텔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속이고 다른 여행사나 호텔 등에 데려다주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등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 따라서 폭리행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묵고자하는 숙소의 위치, 연락처, 가격 등 정보를 파악하고, 만일 오토릭샤, 택시기사 등이 다른 곳으로 안내하려고 하여도 이에 응하지 말고 원래 예정하였던 목적지로 가자고 해야 한다. 또한, 사실 여행사가 마치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행사인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의 여행사로 안내해서 바가지 상품을 강매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부운영 또는 정부보증 운운하는 여행사의 사기판촉에 절대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환전 사기

- 현지인이 여행객에 접근, 유리한 환전조건을 제시한 후 약속한 환전금액에 못 미치게 환전해 주는 환전 사기 사례가 있다. 환전사기범은 눈앞에서 지폐를 세어 보인 후 봉투에 넣어 교부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노상에서 환전하거나 무면허 환

전소를 이용하는 것은 삼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부상 시 병원 이용

과거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관계로 전국 각지에 정부운영 병원(Government Hospital)이 있어 외국인도 무료로 응급조치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의료진 부족 및 장비·시설의 노후, 비위생적 환경 등 우리나라에 비하면 의료서비스는 현저히 떨어진다. 델리, 첸나이, 뭄바이 등 주요 대도시에는 정부병원보다 의료진과 시설이 우수한 사설병원이 많이 있어 어렵지 않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비싼 편이다.

그러므로 델리,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 발병, 사고 시 가급적 현지 병원에서 응급처치만 받고 대도시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수술 등 비교적 고가의 치료는 귀국하여 국내병원에서 받는 것이 비용, 의료 질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사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사관 방문 및 발급 신청: 분실사유서 작성
-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2장
- . 여권의 경우, 5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4~6주 소요
- . 여행증명서의 경우, 7달러 납부 후 당일 혹은 1~2일 소요

3) 응급 전화번호

- 화재 소방 : 101
- 경찰 : 100
- 구급차 : 102

4) 뉴델리 인근 종합병원

① FORTIS Hospital

- 주소 : 44, Opposite HUDA City Centre, Gurugram, Haryana 122002
- 전화번호 : +91-97300-01540

② Apollo Hospital

- 주소 : Sarita Vihar, Delhi Mathura Road, New Delhi - 110076
- 전화번호 : +91-011-2692-5858 / 5801

③ AIIMS Centre

- 주소 : Ansari Nagar, New Delhi - 110029

- 전화번호 : +91-011-2658-8500 / 8700

④ Max Hospital

- 주소 : 2, Press Enclave Road, Saket New Delhi, Delhi 110017

- 전화번호 : +91-011-2651-5050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등 인도 주요 지역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가능한 한국인과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생활편의나 안정상 유리하다. 뉴델리의 경우, 신도시인 구르가온과 노이다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일본인과 한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으며 대부분의 주재원은 이들 지역에 모여살고 있다. 뉴델리의 경우 아파트가 거의 없고 3~4층짜리 단독 주택의 일부를 빌리는 형태로 임차가 이루어진다.

단독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주택 임차료는 2020년 하반기 기준 월 500달러부터 월 3,000달러 수준으로 거실 1개, 방 3개, 주방 1개, 주차장 1~2개와 기본 가구가 포함된 가격이다. 전기세는 따로 지불해야 하며, 안전관리비, 공동유지비의 경우 포함, 불포함 여부를 계약서상에 기입해야 한다. 뉴델리에서 거주하는 경우 대개 단독 건물 임차를 주로 하게 되는데,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주택 및 렌트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구르가온 지역은 뉴델리에 비해 저렴한 임차 가격에 동일한 면적, 전기 및 용수 문제 걱정이 없는 아파트를 구할 수 있어서 많은 주재원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한국 상점과 음식점이 모여있는 쇼핑몰을 갖추는 등 최근 한국기업의 인도진출 활성화와 맞물려 거주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구르가온 지역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500달러에서 3,500달러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주택 임차 시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하여 쉽게 물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보통 1개월분의 임차료이나 네고 시 보름분의 임차료지불도 가능하다. 이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이 수수료는 변경될 수가 있다. 임차 계약 시 대부분 소유주는 세금 감면을 위해 11개월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적게는 2개월 많게는 1년 치의 보증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계약 시 락인(Lock in)기간은 6~11개월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네고를 통해 3개월까지도 감면할 수 있다. 보증금은 해약 시 거주기간 중 미지불건 또는 주택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집주인에 따라서는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보증금과 관련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반환시기 또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입주 전 수리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경우는 수리가 완료된 후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하는 것이 좋다. 가구를 함께 들이는 계약을 한 경우도 또한 가구나 관련 집기들의 대부분이 갖추어졌음을 확인하고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많은 경우 잔금이 지불된 뒤에 집주인이 집수리나 집기의 구비를 늦추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요 건축물이나 집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을 남기고 공제금액을 명확히 따져야 추후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두고 시빗거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화

전화 신청은 먼저 BSNL(국영 전화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청 시 신청서 및 거주 확인증 사본(주택 계약서 사본), 신원 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한 후 최대 2~3주 내에 설치된다. 비용은 설치비, 등록비가 소요된다. 개인 통신사인 Airtel, TATA Indicom, Reliance의 경우, 신청서 및 거주 확인증 사본, 신원 증명서(아달카드, 여권) 사본 등을 제출한 후 최대 1~2주 이내에 설치된다. 비용은 설치비, 등록비가 소요된다.

전압/플러그

인도는 전력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해 약 10% 정도의 수급 격차가 상존하여 단전이 일상화되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단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따라서 일반 가정이나 호텔 등에서 자체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불안정한 전기사정으로 일반 생산 공장에서도 외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발전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최근에는 뉴델리를 중심으로 전력 공급 상황이 상당히 개선된 상황이다.

전기 규격은 50Hz, 220V가 표준이다. 한국(60Hz)과 헤르츠가 달라 한국에서 반입한 국산 전자제품(특히 모터 부착)의 경우 가동되기는 하지만 100%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1~2년) 사용 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전압의 등락 폭이 커 180~280V까지 움직이므로 민간제품은 안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컴퓨터 등에는 UPS를 부착하여 전기가 나갈 경우 자동으로 UPS 전원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플러그의 형태가 한국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인도 전용 플러그가 달린 전자제품을 이용하거나 전환용 플러그를 사용해야 한다.

식수

물은 반드시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거나 끓여 마셔야 한다. 인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짧은 시간 체류하는 경우라면 양치질을 할 때도 생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인도에서는 Aquafina, Kinley 등 다양한 브랜드의 생수를 슈퍼마켓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인도의 하수 처리율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뉴델리의 경우 식수원을 히말라야 산지에서 끌어오지만, 노후 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식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구르가온, 노이다의 경우 지하수를 끌어서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수의 사용과 음용은 고급 호텔이라고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차량을 구입할 시 운전면허증, 거주지 확인서, 차량 구입 계약서, 차량 보험 지불증 등 관련 서류를 RTO(Regional Transport Office)에 제출하여 차량에 대한 검사(엔진 번호 등)를 마친다. 등록 후 10일 이내 차량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은 현대, 스키키, 도요타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있으며 현지 대리점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며, 같은 차종이라도 옵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과 동일하다. 자동차 가격에서 세금 부분에 대한 언급을 빼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 차량등록비용, 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미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량가격

인도는 자국 자동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수입자동차의 가격은 매우 비싼 편이다. 현지 생산에서는 시장점유율 1위 마루티 스즈키사와 한국 현대자동차의 차량의 인기가 높다. 인도의 도로 사정으로 인해 SUV 차량이 선호되고 있다. 차량 가격은 한국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경차의 경우 800~1,500만 원, 세단은 1,200~2,000만 원 가량이며, SUV는 소형 위주로 판매되고 1,800~2,500만 원 수준이다.

운전면허 취득

국제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며 인도 면허취득이 가능하나 인도는 도로환경이 낙후되어 있어 운전 시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함으로 외국인 대부분의 경우 현지 기사(드라이버)를 고용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한국계 은행 : 신한은행(뉴델리 등 3개 지점), 우리은행(구르가온 등 1개 지점),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 글로벌 은행 : HSBC, Citi Bank, Standard Chartered Bank 등

계좌 개설방법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개인 여권 사본, 회사 고용 계약서, 팬카드, 거주 확인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면 되고, 은행마다 다르나 은행 영업일 기준 7일내지 15일정도 소요된다. 한국인의 경우 대개 대도시를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계 은행에서 계좌를 열어 사용한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o GD Goenka World School

도시명	구르가온
커리큘럼	구르가온 주에 위치한 국제학교로 입학시험 후 입학이 가능하며 기숙사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수업시간은 아침 7시 45분~오후 3시며 인도학제인 CBSE와 외국학제인 IGCSE와 IB를 따른다.
학비	6학년까지 16,537달러 7~12학년까지 29,598달러
홈페이지	https://gdgws.gdgoenka.com/
비고	구르가온 내 국제학교

o AES (Amarican Embassy School)

도시명	뉴델리
커리큘럼	뉴델리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 학교로 입학시험 후 입학이 가능하며 수업시간은 아침 7시 45분~오후 3시이며 외국학제인 IGCSE와 IB를 따른다.
학비	6학년까지 19,300달러 7~12학년까지 39,008달러
홈페이지	https://aes.ac.in/
비고	미국 대사관에서 운영되는 학교

<자료원 : 동 사이트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 현지학교

o Lancers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구르가온
커리큘럼	구르가온주에 위치한 현지 국제학교로 시험 후 입학이 가능하며, 수업시간은 아침 7시 45분~오후 3시이며 인도학제인 CBSE와 외국학제인 IGCSE와 IB를 따른다.
학비	6학년까지 16,537달러 7~12학년까지 29,598달러
홈페이지	http://www.lis.ac.in/

비고	구르가온 내 현지-국제학교
----	----------------

○ Delhi Public School

도시명	뉴델리
커리큘럼	뉴델리에 명문 현지 학교로 입학시험 후 입학이 가능하며 수업시간은 아침 7시 45분~오후 2시이며 인도학 제인 CBSE를 따른다.
학비	6학년까지 3,000달러 7~12학년까지 5,000달러
홈페이지	https://www.dpsrpk.net/
비고	대부분의 현지 학교는 입학 시 기부금을 요구한다.

<자료원 : 동 사이트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마. 병원

○ Fortis Hospital

도시명	구르가온
주소	Tower A, Unitech Business Park, Block F, South City1, Sector-41, Gurgaon, Haryana
전화번호	0124 37686 268
진료과목	종합병원

○ Jaypee Hospital

도시명	노이다
주소	Jaypee Hospital Rd, Goberdhanpur, Sector 128, Noida, Uttar Pradesh
전화번호	1204122222
진료과목	종합병원

○ Indraprastha Apollo Hospital

도시명	뉴델리
주소	Srita Vihar Delhi Mathura Road, New Delhi
전화번호	011 2987 1090
진료과목	종합병원

○ Max Hospital

도시명	뉴델리
주소	2, Press Enclave Road, Saket
전화번호	011 2651 5050
진료과목	종합병원

○ AllMS Centre

도시명	뉴델리
주소	Ansari Nagar, New Delhi - 110029
전화번호	011 2658 8500 / 8700
진료과목	종합병원

<자료원 : 동 사이트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Ambience Mall

도시명	구르가온
주소	Ambience Mall Gurgaon, National Highway - 8,
홈페이지	http://www.ambience malls.com
비고	뉴델리 수도권인 구르가온에 위치한 엠비언스몰은 뉴델리 시내공항에서 15분 정도 걸리며 인도 내 가장 큰 쇼핑몰이다.

○ South Point Mall

도시명	구르가온
주소	South Point Mall, Golf Course Road, DLF City, Phase V, Sector 53, Gurugaon
홈페이지	http://www.southpoint.com
비고	뉴델리 수도권인 구르가온에 위치한 사우스포인트몰은 한국인, 일본인이 주로 애용하는몰로 한국식품점, 한국음식점, 일본음식점 등이 위치해있다.

○ DLF Promenade

도시명	뉴델리
주소	3 Nelson Mandela Marg, Vasant Kunj Mall Road, New Delh

홈페이지	http://www.dfpromenade.com/
비고	뉴델리 중심부에 위치한 프로미네이드몰은 엠비언스델리몰과 DLF엠포리오몰과 연결돼 있으며, 주요 브랜드 의류 가격은 보통 한국보다 저렴한 편이다.

〈자료원 : 동 사이트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 식품점

○ Le Marche

도시명	구르가온
주소	Ground floor, South Point Mall, Golf Course Road, DLF City, Phase V, Sector 53, Gurugaon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수입식품
비고	구르가온주에 위치한 대형 식품점으로, 주로 수입 식품이 많다.

○ Kims Market

도시명	구르가온
주소	Basement, DT Mega Mall, Golf Course Road, DLF City, Phase V, Sector 53, Gurugaon
취급 식료품	한국 식품과 현지 특산품
비고	한국 식품점이나 현지 특산품도 판매한다.

○ INA Market

도시명	뉴델리
주소	Sri Aurobindo Marg, Aviation Colony, INA Colony, New Delhi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비고	뉴델리 중심부에 위치한 현지시장으로 번잡하나 현지 제품을 구하기 적합하다.

〈자료원 : 동 사이트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 기타 편의시설

○ DLF Golf and Country Club

도시명	구르가온
주소	Opp American Express, Golf Course Road, DLF Phase 5, Sector 42,, Gurugram, Haryana
홈페이지	http://www.dlfgolfresort.com/
소개	구르가온에 소재한 골프장

o Jaypee Green

도시명	그레이트노이다
주소	G Block, Surajpur Kasna Road, Greater Noida
홈페이지	http://www.jaypeegreens.com/
소개	그레이트노이다에 소재한 골프장

o Siri Fort Sports Complex

도시명	뉴델리
주소	August Kranti Marg Khel Gaon Siri Fort Sports Complex, New Delhi
홈페이지	http://www.ddasports.com/SiriFort/index.html
소개	델리에 소재한 스포츠 콤플렉스로 수영장, 농구장 골프연습장 등 보유

<자료원 : 동 사이트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힌두 축제	2020-04-21	Ram Navami
힌두 축제	2020-11-04	Diwali (Deepavali)
기독교 축제	2020-12-25	Christmas
헌법 공포일	2021-01-26	Republic Day
힌두 축제	2021-03-29	Holi
기독교 축제	2021-04-02	Good Friday
힌두 축제	2021-04-25	Mahavir Jayanti
이슬람 축제	2021-05-14	Id-ul-Fitr
불교 축제	2021-05-26	Budha Purnima
이슬람 축제	2021-07-21	Id-ul-Zuha (Bakrid)
이슬람 축제	2021-08-19	Muharram
힌두 축제	2021-08-30	Janmashtami
마하트마 간디 탄생일	2021-10-02	Mahatma Gandhi's Birthday
힌두 축제	2021-10-15	Dussehra

이슬람 축제	2021-10-19	Milad-un-Nabi (Birthday of Prophet Mohammad)
시크교 축제	2021-11-19	Guru Nanak's Birthday

<자료원 :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9. KOTRA 무역관 안내

뉴델리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Unit 307, 3rd Floor, Worldmark 3, Aerocity, Indira Gandhi International Airport, New Delhi- 110037
- 전화: (91-11)4230-6300
- FAX: (91-11)4230-6301
- E-mail: Reception@ktcdelhi.net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출발 시

무역관이 위치한 Aerocity는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에서 약 3.9km 떨어져 있어 이동 시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약 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공항에서 빠져나온 뒤 Northern Access Road를 타고 뉴델리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유턴한다.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좌편으로 Lemon Tree Premier 호텔이 보이고, 호텔을 지나 좌회전하면 뒤편으로 Worldmark 3 건물이 보인다.

○ 건물 도착 후

3개의 빌딩(Worldmark 1,2,3) 중 무역관은 3빌딩의 3층에 위치해 있으며, 로비 Security Desk에서 방문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역관에 유선으로 확인 후 출입증을 제공해 준다. 무역관의 확인을 위하여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뭄바이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1001A, Tower 1, Indiabulls Finance Centre, Senapati Bapat Marg, Elphinstone(W), Mumbai 400 013, INDIA
- 전화: (91-22) 4925-5400
- 팩스: (91-22) 4925-5454
- e-mail: kotra_mumbai@kotra.or.kr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출발 시

뭄바이 공항에서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택시 기준 약 1시간이 소요된다. 기사에게 무역관 주소를 보여주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다. 뭄바이의 경우 대중교통이 불편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택시를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벵갈루루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Unit no. 2201, 22nd Floor, World Trade Center(WTC), Brigade Gateway, #26/1, Dr. Rajkumar Road, Malleshwaram (W), Bengaluru - 560055, India
- 전화: (91-80) 6793 5436 (무역관 리셉션)
- e-mail: hschoi@kotra.or.kr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출발 시

벵갈루루 공항에서 시내 중심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곤란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사에게 무역관 주소를 보여 주면 대개 쉽게 찾아온다. 주변 랜드마크로는 Orion mall 또는 Sheraton hotel을 말하면 된다. 벵갈루루의 경우 대중교통이 보편화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택시를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첸나이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New no.12/1, Old no.11, Bashyam Basheer Ahmed Street, Alwarpet, Chennai-600 018
- 전화: (91-44)2499-7283~7
- 팩스: (91-44)2499-4728
- e-mail: jangkangsuk@kotra.or.kr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출발 시

첸나이 공항에서 시내 중심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곤란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에게 무역관 주소를 보여 주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평균 소요시간은 30분가량이다. 첸나이의 경우 대중교통이 보편화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택시를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콜카타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Smart Works Victoria Park, Level 8, Block GN37/2, Sector V, Salt Lake City, Kolkata, West Bengal 700091
- 전화: (91-33) 4055-8123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출발 시

콜카타 공항에서 시내 중심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곤란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사에게 무역관 주소를 보여 주면 쉽게 찾아올 수 있다. 대략 30분에서 40분가량 소요된다. 콜카타의 경우 대중교통이 보편화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택시를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암다바드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805 &806 Shivalik Shilp BD, Iscon Circle, SG Road, Ahmedabad 380015, Gujarat, India
- 전화: (91-79) 49130-111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출발 시

암다바드 공항에서 시내 중심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곤란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사에게 무역관 주소를 보여 주면 쉽게 찾아올 수 있다. 대략 40분에서 50분가량 소요된다. 암다바드의 경우 대중교통이 불편화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택시를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